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추이 분석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 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애견보험 판매 활성화 기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2007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위원회」 운영실적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예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 해외보험 동향

국제 동향
북미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기타 동향

보험연구원

목 차

테마진단	1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추이 분석	1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10
보험산업 환경	19
1. 해외 경제	19
2. 국내 경제	21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23
보험지표 동향	25
1. 보험산업 총괄	25
2. 생명보험	27
3. 손해보험	38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49
1.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애견보험 판매 활성화 기대	49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52
3. 2007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위원회」 운영실적	58
4.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예고	62
5.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64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6
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69
8. 2007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71
해외보험 동향	75
1. 국제 동향	75
2. 북미 동향	79
3. EU 동향	85
4. 일본 동향	101
5. 기타 동향	117
통계표	127

테 마 진 단

◆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추이 분석

최영목 부연구위원

1.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활동성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이익률은 FY2001 이후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총 자산이익률을 구성하는 지표들 중에서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하락추세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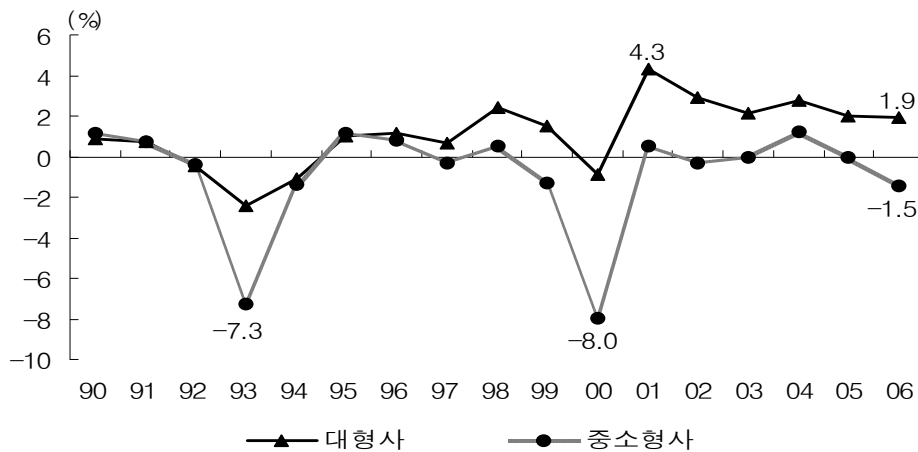
-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재무비율인 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ROA)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산회전률로 분해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음.

$$\begin{aligned}\text{자산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산}} = \left(\frac{\text{보험영업이익}}{\text{보유보험료}} + \frac{\text{투자영업이익}}{\text{보유보험료}} \right) \times \frac{\text{보유보험료}}{\text{총자산}} \\ &= (\text{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 + \text{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 \times \text{총자산회전율}\end{aligned}$$

- 보험회사의 수익성 지표로서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로 측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보다는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비율로 측정하는 자산이익률(ROA)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이는 보험회사 자금조달의 많은 부분이 거수된 보험료이므로 분모 부분에 주주의 몫을 의미하는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기자본과 부채의 합인 총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 영업이익 대신에 당기순이익도 사용이 가능하나 당기순이익에는 금융비용과 세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순수하게 보험회사의 영업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영업이익을 사용함.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보유보험료(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로 측정하며, 이는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냄.
- 제조업과 달리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은 보험영업부문과 투자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과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음.
- 활동성 비율인 총자산회전율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자산대비 보유보험료의 비율로 측정하며, 이는 경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임.
- 경영자원의 효율적 이용 수준은 궁극적으로 고객이 결정하므로 보험영업부문의 자산회전율은 고객만족경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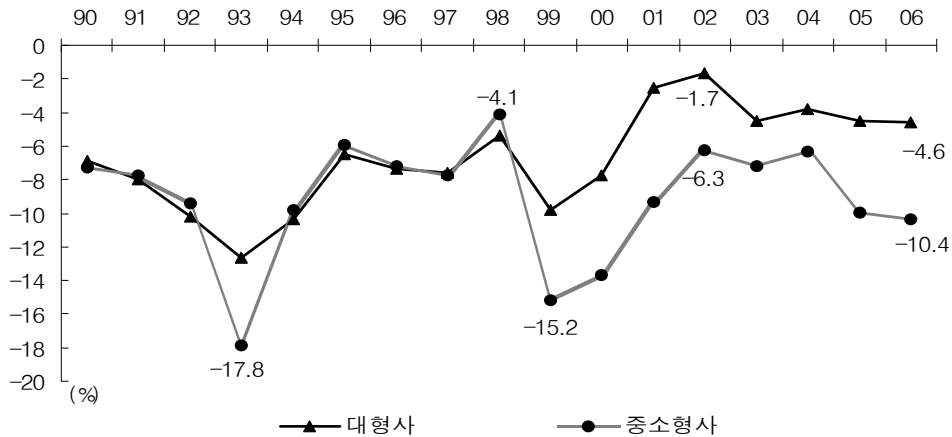
<그림 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이익률(ROA) 추이



-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이익률을 살펴본 결과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순환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FY2001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자산이익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FY2001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FY2006 현재 대형사(시장점유율상위 4개사)의 자산이익률은 1.9%이고 중소형사의 자산이익률은 -1.5%에 지나지 않아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확대되는 자산에 비해 영업이익은 매우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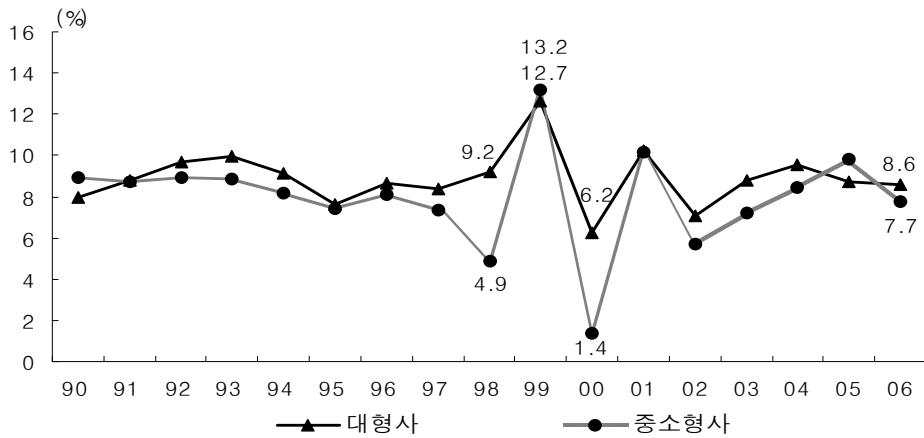
- 특히, 중소형사의 자산이익률은 지속적으로 대형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수익성이 악화된 FY1993과 FY2000에 중소형사의 자산이익률은 각각 -7.3%와 -8.0%를 나타내어 같은 회계연도의 대형사 성과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냄.

<그림 2> 손해보험회사의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 추이



- 손해보험회사들의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음(-)의 값에 머무르고 있음(<그림 2> 참조).
-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체질 개선을 통해 다소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다 FY2002 이후에는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FY2006 현재까지 양(+)의 값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음.
- FY1999 이후부터 중소형사의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은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FY1999에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은 전년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미루어 경기수축기에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그림 3> 손해보험회사의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 추이



□ 손해보험회사들의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은 대체로 8.0%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 여건에 따라 등락폭이 큰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 참조).

-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은 대체로 8.0% 전후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은 대형사가 6.2% ~ 12.7% 사이, 중소형사가 1.4% ~ 13.2% 사이의 분포를 나타내어 중소형사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FY1999에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이 각각 12.7%와 13.2%로서 비슷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다음 해인 FY2000에 대형사는 6.2%로 하락하고 중소형사는 1.4%로 크게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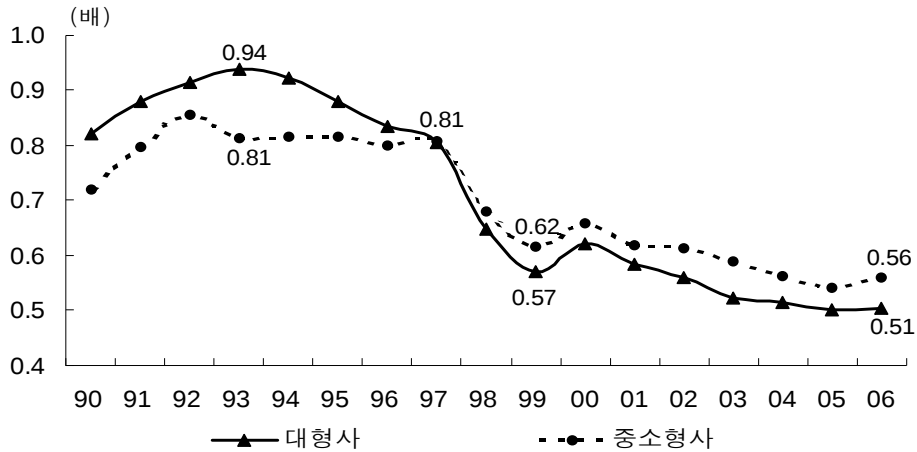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영업부문에 대한 총자산회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06 현재에는 매출액이 총자산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음(<그림 4> 참조).

- 보험영업부문의 총자산회전율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장기손해보험의 판매비중 확대와 함께 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총자산회전율은 FY1993 각각 0.94배와 0.81배를 기록하여 총자산과 매출이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하락으로 FY2006에

는 각각 0.51배와 0.56배를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총자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임.

- o 또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총자산회전율은 FY1997 모두 0.81배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FY1999에는 각각 0.57배와 0.62배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경기수축기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특징을 보임.

<그림 4>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부문 총자산회전율 추이



2.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재무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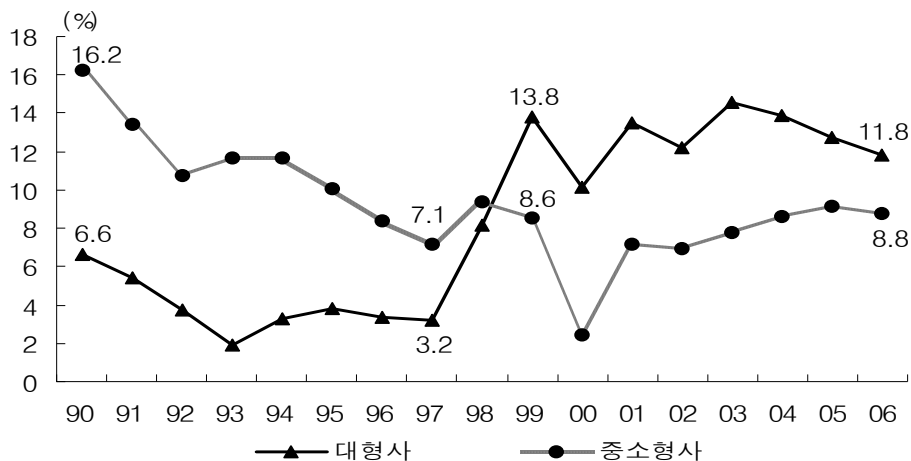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와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자산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은 대형사 위주로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낮은 수익성에 따라 순자산비율과 지급여력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financial structure)를 반영하는 순자산비율은 FY1997에 비해 FY2006 현재 대형사가 큰 폭의 개선을 달성한 데 반해 중소형사는 소폭 개선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text{순자산비율} =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총자산} - \text{총부채}}{\text{총자산}} = 1 - \text{부채비율}$$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여부는 총자산 대비(총자산-총부채)의 비율로서 측정하는 순자산비율(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부실가능성 혹은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함.
- 미국의 경우에도 자산의 시장가치에서 부채의 시장가치를 차감한 순수잉여가치(surplus)로서 보험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잉여가치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하고 있음.
- 순자산비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FY1990에 각각 6.6%와 16.2%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FY1997에는 3.2%와 7.1%를 기록하여 중소형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폭은 컸음.
- 이후 FY2006에 대형사는 11.8%까지 상승한 데 비해 중소형사는 8.8%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대형사가 중소형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대형사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순자산비율도 크게 감소하면서 부실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그림 5> 손해보험회사의 순자산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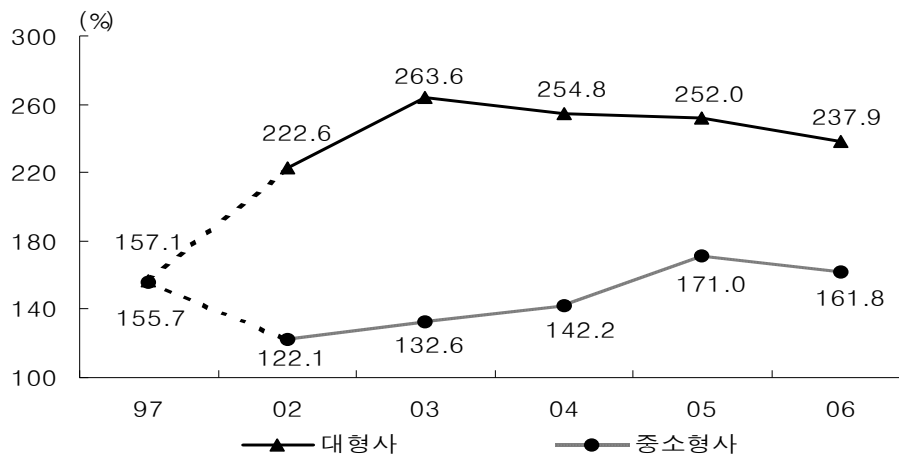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financial health)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은 FY1997에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대형사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체로 150%에서 200% 분포를 나타냄(<그림 6> 및 <그림 7> 참조).

$$\text{지급여력비율} = \frac{\text{지급여력금액}}{\text{지급여력기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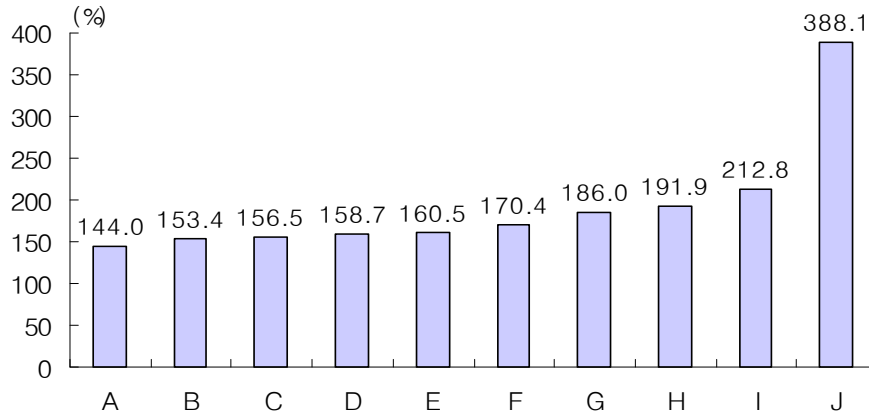
- 지급여력비율은 손해율, 파산확률 등 경험통계에 의한 보험종목별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적정잉여금(지급여력기준금액) 이상으로 보유한 순자산의 의미하므로 손해보험회사 재산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임.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이상이면 “우수”, 150%이상 200%미만이면 “양호”, 100%이상 150%미만이면 “보통”, 그리고 100%미만이면 “위험”으로 평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짐.
- 각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단순 평균하여 그룹별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 결과 대형사는 FY1997 157.1%에서 FY2006에 237.9%로 크게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동 기간에 155.7%에서 161.8%로 미미한 상승세를 나타냄(<그림 6> 참조).

<그림 6>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추이



- FY2006에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분포를 살펴본 결과 150%에서 200% 사이의 “양호” 판정에 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7> 참조).
- 또한 150% 미만으로 “보통” 판정에 해당하는 회사는 단 1개사이고, 200% 이상으로 “우수” 판정에 해당하는 회사는 2개사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FY2006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분포



3. 요약 및 시사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자산이익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수익성 제고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이익률이 하락추세를 나타내므로 자산이익률을 구성하는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모두에서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됨.
-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들은 손해를 축소와 고정비용 절감노력을 통하여 사업비율을 축소하여 보험영업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과당경쟁 지양, 장기손해보험 중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일반손해보험 중목에서 수익성 제고에 유리한 상품의 발굴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매출액투자영업이익률은 자산운용 여건에 따라 등락폭이 큰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 부문에서 리스크관

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함.

- 특히, 장기손해보험 종목의 비중이 커지면서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및 만기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보험영업부문과 투자영업부문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총자산회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살을 제거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장기손해보험의 판매비중 확대에 따라 누적으로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증가된 자산규모에 걸맞는 보험영업부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객만족도(매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순자산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의 추이 및 분포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 및 리스크관리 능력의 제고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FY1999 매출액보험영업이익률이 대형사가 중소형사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낸 이후부터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순자산비율도 대형사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보험영업부문에서 수익성 제고를 통한 순자산가치의 확충이 건실한 재무구조 달성을 위한 핵심임.

○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은 지난 FY1997 이후 FY2006 현재까지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가 존재함.

-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손해보험회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통한 이익잉여금의 확충, 유상증자, 금리 및 주가 변화에 따른 시장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김세환 수석연구원

1. 서론

신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재편이 예상되므로 민영건강보험도 국민건강보험 보충형 건강보험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재원조달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체제 구축이 필요

- 1977년 7월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급여 범위의 제한, 지역·직장 가입자 간 보험료부담의 불공정성, 의료니드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 지난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능동적 복지란 국정지표 아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 또한 기획재정부는 3월 10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7%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해외 의료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 향후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재편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보험산업도 보건의료시스템의 재편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은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의 마련과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2. 민영건강보험¹⁾ 활성화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영건강보험에 투입되고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의료보장성 강화가 필요

- 보건정책당국은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만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 민영건강보험은 보건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여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왔음.
- 이에 비해 OECD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는 공사건강보험의 조화로운 발전이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민영건강보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재정보조금과 기타 세제상의 혜택을 도입하여 민영건강보험시장을 발전시켜 왔음.
-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료보장성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급격한 재정수지 악화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국고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 FY2006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보장을 위해 민영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총보험료는 7조 4,623억원(저축성 보험료 제외)이며, 민영보험사는 이중 6조 66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 동 자원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에 직접 공급되고, 정부당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재원의 투입 없이도 의료보장성을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을, 그 이상의 선택적 의

1) 민영건강보험은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모든 보험상품, 즉 의료비용보험(Medical Expense Insurance)과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come Insurance) 등을 총칭하는 개념임. 그러나 본고에서 민영건강보험이라 함은 의료비용보험 중 질병이나 상해 발생시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이 아니라 실제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료서비스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필요

<표 1> 민영건강보험시장 규모 추정(FY2006)

(단위:억원)

구 분		건강보험료	지급보험금 (손해액)	지급률 (손해율)	보험료비중
생명 보험	정액형	58,549	47,193	80.6%	11.8%
	실손형	8,111	7,321	90.3%	2.8%
합 계		74,623	60,665	81.3%	9.5%

주 : ① 생명보험의 건강보험 보험료는 입원, 진단, 수술, 장해 등을 담보하는 위험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한 금액임.
 ② 손해보험의 건강보험료는 장기보험 및 상해보험의 질병 및 상해담보 경과위험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한 금액임.
 ③ 보험료 비중은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보험통계연감, 생명보험 경험통계연보, 보험개발원 기초통계자료

3. 민영건강보험의 발전모델

전국민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민영건강보험은 의료의 접근성 강화와 국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장하는 보충형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적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모형을 살펴보면 대체형, 중복형, 보충형으로 나눌 수 있음(<표 2> 참조).
- 대체형 민영건강보험(substitute private health insurance)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탈퇴를 선택한 개인이 가입하는 민영건강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이 허용되는 국가에만 존재
- 중복보장형 민영건강보험(duplicate private health insurance)은 공적건강보험에서 이미 보장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중복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는 국가보건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에서 존재

- 국가보건시스템 하에서 국공립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복보장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와 제휴하고 있는 민영의료기관을 이용
- 중복형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공적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영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이중납부의 부담을 지게 됨.
- o 마지막으로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이 있음.
 -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에는 공적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완형 건강보험(com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과 공적건강보험의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충형 건강보험(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이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들 두 유형의 보험상품이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민영건강보험도 공적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함께 보장해주는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표 2> 공적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민영건강보험의 유형

민영건강보험 유형	공적건강보험 의무가입 여부	
	의무가입	미가입 허용
공적건강보험 보장서비스	중복형	대체형
공적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보완형	
공적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금 보충형	

- 의료계 일각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한 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탈퇴한 의료기관이 민영건강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규정이 폐지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제도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함.
- 미국의 Medicare Advantage Plan*처럼 공적 건강보험에서 민영보험회사로 가입자의 의료보장을 위탁하는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 Medicare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적 건강보험이나 가입자가 민영건강보험상품으로 의료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의료보장을 민영보험사로 위탁, 민영보험회사는 Medicare로부터 위탁자 1인당 정액의 보험료를 받는 대신 메디케어에서 제공되던 기존의 의학적 필요서비스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추가 보장을 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도 별도의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한편 민영건강 보험 도입이 국민건강 보험과 중복되지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수한 영리의료법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중복형 민영건강보험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와 민영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면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현저히 적을 것이므로 시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민영건강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충형보험의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난해 의료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함으로써 과잉의료 수요가 유발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KDI 연구용역 결과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 또한 국가보건시스템이나 사회보험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 측면 보다는 의료의 접근성 강화와 국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보다 중시하므로 민영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간 경쟁체제를 거쳐 민영건강보험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위탁시킨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제3자 지급제도의 구축과 지급심사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3자 지급제도 및 EDI 시스템의 구축과 민영의료보험수가 설정,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심사권한 부여가 필요

-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운영하여 의료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직접제 공방식과는 달리 보험회사가 의료의 재정만을 담당하고 의료서비스는 별개의 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간접공급방식 하에서는 의료비 보상을 위해 상환방식이나 제3자 지급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 상환방식(reimbursement method)은 초기 형태의 민영건강보험에서 주로 활용되 던 보상방식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피보험자가 진료 시에 진료비 전액을 의료기관 에 지불하고 다시 청구절차를 거쳐 이를 보험회사로부터 상환 받는다는 측면에서 피보험자에게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줄 뿐 아니라 진료비가 없을 경우 필요한 의료이용이 억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 민영건강보험의 특성상 소액의 보험금 지급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보험회사 입장 에서도 보험금청구의 접수, 전산처리 및 통계관리, 보험금 지급절차 등 행정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상환방식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소수의 국가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한 개업의 사들의 진료비 상환에 여전히 이용되고는 있으나, 전자의료보험카드 등의 활용으 로 피보험자의 의료비 청구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제3자 지급방식(third party payer method)은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후 의료기관이 제3자인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며, 보험자는 청구된 진 료비를 피보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임.
 -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 외에는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게 되므로 의료서 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공사 건강보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
 - 제3자 지급제도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 수급권 확인, 의료비 청

구 및 지급 등을 위한 EDI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행
적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

- 그러나 제 3자 지급제도는 의료서비스 이용시 피보험자가 본인부담금 이외의 진
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의료서비스의 과잉수요를 유발하며, 환자와 진료비 지
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 및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료수가의 제정과 의료행위의 의학적 필요성 심사가 필요

□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비를
지급한 후 이 비용을 다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상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3자 지급방식의 도입이
필요

- 민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대가치점수표를 제정하고 매년 민영보험사 대표와 의약계 대표자간에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의료수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
·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
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장과 의약계 대표자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정
하는 방법으로 의료수가계약을 체결

- 다만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사적자치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하므
로 민영의료보험수가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민영건강보험환자를 취급
할 수 있게 하는 선택계약제를 실시하거나, 수가 이상의 진료비 청구를 허용하는
대신 이를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여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통해 진료비 인상을
억제하여야 함.

□ 현재 민영건강보험은 상환제방식에 있기 때문에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으
나 제3자 지급체제가 구축되는 경우 과잉의료공급을 막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에 대
한 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주체와 지급주체
를 분리하여 심사권한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각각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영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거나 독립적인 제3의 심사평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EDI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 구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5. 민영건강보험의 규제체제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한 보건의료비 재원조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규제 수준의 강화가 예상되며, 금융상품 관련 규제 외에도 보건의료 관련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민영건강보험은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한 건전성규제, 업무행위규제, 상품규제 등을 받고 있으나, 정책당국에서는 이들 규제 외에도 상품표준화 등 규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재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상품표준화와 공·사보험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오는 10월 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시킬 계획
- 상품표준화는 민영건강보험상품을 몇 가지의 단순한 유형으로 분류, 판매회사간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며, 보험계약자 및 의료기관이 상품의 보장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메디갭상품을 민영건강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음.
 - 메디갭 보험회사는 알파벳 이름을 사용해 “표준화”된 상품(메디갭플랜 A-L)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어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든 동일한 급부를 제공하므로 회사간 상품의 차이는 단지 가격에서 발생
 -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상품*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약관이 통일되어 있으나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상한도나 보장항목, 본인부담금 등이 회사별로 상이함.

- 상품 표준화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을 등급별로 표준화하고, 간병비용, 보철 및 임플란트, 시력교정술, 한방첩약, 물리치료, 대체의학 등 이미 대중화된 선택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생명보험사의 개인형 민영건강보험상품을 현재 개발 중으로 아직 시장에 미출시

□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민영건강보험이 차지하는 중요성(보장인구비율이나 의료비지출구성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지원이 강한 경우가 많음.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사항을 세제혜택 적격요건으로 설정하여 인센티브방식으로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규제내용은 상품표준화 외에도 건강보험의 이동성(portability) 및 계약갱신(renewal) 보장, 보험료 산정방식, 기왕증에 대한 보장제한 금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음.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7년 4/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등에 따른 주요 선진국 경제둔화 움직임으로 인해 경제둔화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2007년 4/4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한 선진국 경제둔화 움직임이 있으나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어 경제둔화가 완화됨.
- 미국의 2007년 4/4분기 GDP성장률은 0.6%(잠정치)로 소폭의 증가에 그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증대
- 중국경제는 4/4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 4/4분기 중국 소비자물가는 6.6%로 급속히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2008년 1/4분기까지 지속될 전망
- 일본경제는 미국 경제 둔화 등이 수출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모습
- 유로지역 경제는 경기하락 위험과 더불어 4/4분기 물가가 2.9%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단위 : %)

	2006		2007			
	4/4	연간	1/4	2/4	3/4	4/4
미 국	2.5	3.3	0.6	3.8	4.9	0.6
중 국	10.4	11.1	11.1	11.9	11.5	11.2
일 본	5.5	2.2	2.6	-1.6	2.6	-
유 로	0.8	2.8	0.8	0.3	0.8	-

주 : 미국 전기비연율, 중국 동기비, 일본□유로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2008. 3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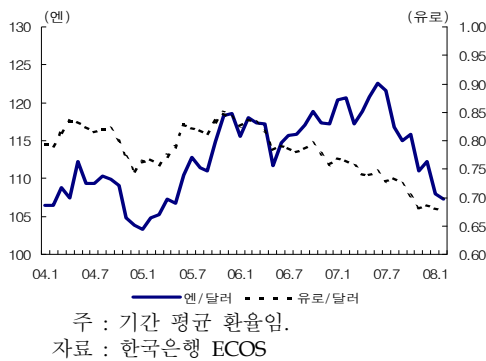
(단위 : %)

	2006		2007			
	4/4	연간	1/4	2/4	3/4	4/4
개인소비지출	3.9	3.1	3.7	1.4	2.7	2.0
주거건축투자	-17.2	-4.6	-16.3	-11.8	-20.5	-23.9
산업생산	-1.5	3.9	1.1	3.5	3.6	-1.0
소매판매	0.2	6.2	1.6	1.3	0.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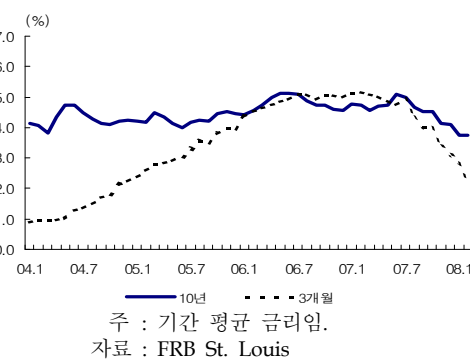
주 : 소비지출□건축투자 전기비연율, 생산□판매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최근경제동향』 2008. 3

- 2007년 4/4분기 미국금리는 주가하락, 금융기관 손실 증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되면서 하락하고 있음.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여파로 2007년 9월 5.10%를 정점으로 2008년 1월에는 3.74%까지 하락함.
- 일본은 경기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일부에서는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는 미국경제 침체의 파급영향과 금융불안 우려 등으로 급락함.
- 유로지역 금리는 통화급증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으나 서브프라임 충격에 따른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
- 미국의 증시는 경기침체 우려 증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손실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
- 유로지역 주가도 미국경제 침체의 파급과 금융불안 우려 등으로 Euro Stoxx가 2007년말 4,399.7이었던 것이 2008년 1월 3,792.8로 13.8%나 급속히 하락함.

<그림 1> 국제환율 추이



<그림 2>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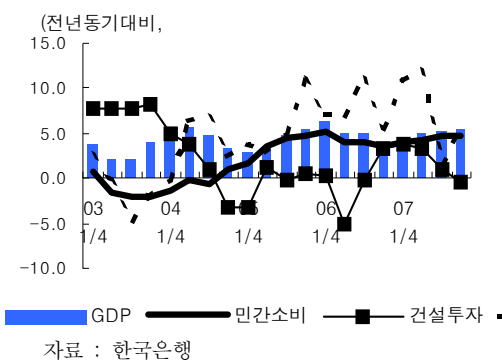


2.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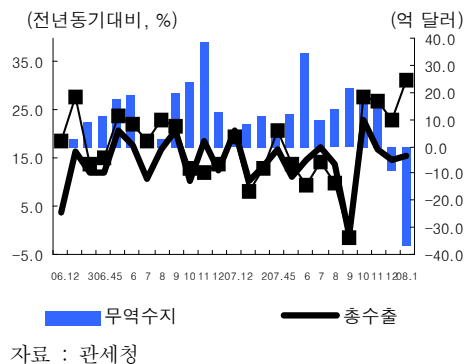
2007년 4/4분기 GDP는 소비의 회복세 지속과 수출이 견조한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5% 성장하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함.

- 4/4분기 GDP는 민간소비가 전분기와 동일하게 4.7% 증가하고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5.5% 성장함.
- 4/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수준의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소비재판매는 12월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됨.
- 4/4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조정국면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전년동기 대비 5.7%, 전기비 4.4%로 증가하였음.
-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4/4분기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전기비로는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의 증가로 회복세를 일부 보임.
- 2007년 4/4분기 수출은 석유제품, 선박, 기계류, 디스플레이 등이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크게 신장하였으나 분기말 수입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4/4분기 원유 등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차는 2007년 12월 이후 적자를 시현하기 시작함.

<그림 3> 부문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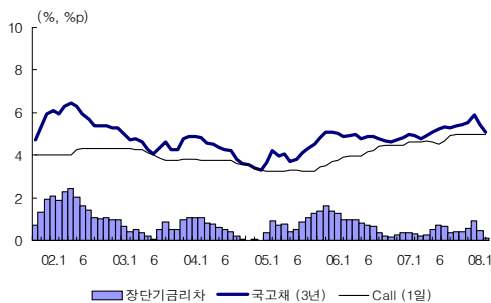


<그림 4> 대외 거래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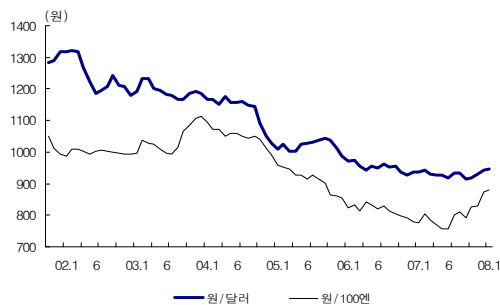
- 2007년 4/4분기 중 국고채 수익률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국채하락에 따른 저가매수세와 각국 중앙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혼조
- 11월, 12월 CD/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12월 중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국채가격의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하락함.
- 단기 금리인 CD(91일물) 유통수익률은 분기 중 발행물량이 증가하면서 분기 말까지 급등함.
- 원/달러 환율은 4/4분기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라 하락하다가 국제시장의 불안과 미국의 경기침체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12월 말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마감.
- 원/달러 환율은 2007년 중 원화절하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원화 절상에 대한 반작용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함.
- 원/100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라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한 때 830원 대로 큰 폭으로 상승함.

<그림 5>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6>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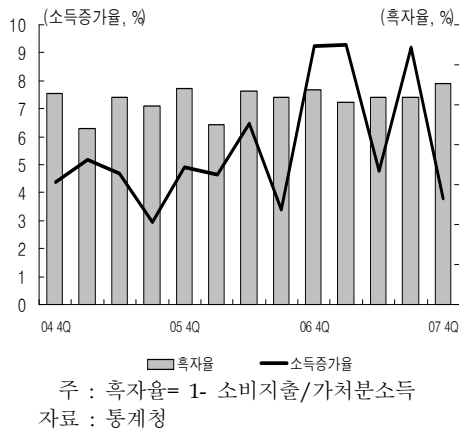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ECOS

3. 가계경제 및 시중 자금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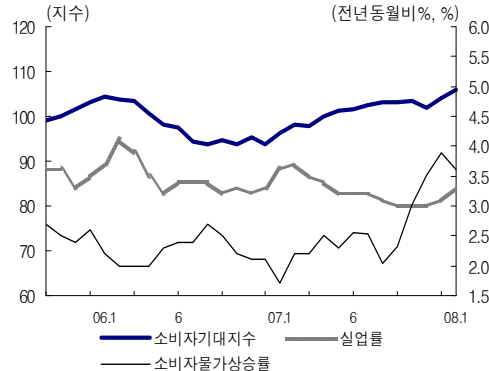
소비자기대지수는 4/4분기 100대 초반을 유지한 반면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도 증가세를 보임.

- 2007년 4/4분기 들어서도 소비자기대지수는 11월 102.0으로 하락하기는 했으나 이후 12월 104.0으로 마감하면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상승했고 실업률은 안정세 속에서 12월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물가상승률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시근로자가구의 흑자율은 소폭 증가함.
- 소비자기대지수는 2007년 4월 100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11월 102.0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12월 104.0으로 다시 상승 마감함.
- 2007년 4/4분기 중 실업률은 3.0%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12월 3.1% 2008년 1월 3.3%로 증가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분기 초 3.0%로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3.6%까지 상승함.
- 2007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3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에 그치고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4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하면서 흑자율(27.6%)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함.

<그림 7> 도시간계 소득, 흑자율



<그림 8>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 2007년 4/4분기(FY2007 3/4분기)중 은행 수신은 저축성 예금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투신권은 주식형이 크게 증가한 반면 채권형과 MMF가 감소함.
- 2007년 4/4분기에 은행은 전분기 대비 은행신탁이 감소했으나 저축성예금을 위시한 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민간신용이 늘면서 전체 순수신이 증가함.
- 투신권의 4/4분기 자금흐름은 채권형과 MMF가 감소했으나 주식형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신권 순수신이 크게 증가함.
- 4/4분기 증권사의 순수신은 고객예탁금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환매조건부채권도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로 돌아 섬.
- FY2007 3/4분기(CY 4/4분기) 생명보험은 주가상승에 따라 변액보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순수신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손해보험도 순수신이 장기보험의 성장에 따른 수입확대로 전분기보다 증가함.

<표 3>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6				CY2007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81,083	93,699	89,600	115,113	95,422	106,338	93,397	108,974
생명보험	66,460	74,238	69,914	94,257	74,700	83,189	70,215	84,269
손해보험	14,623	19,461	19,686	20,856	20,722	23,149	23,182	24,705
은 행	-41,969	225,384	128,483	181,165	33,002	101,574	8,442	204,778
일반계정	-85,002	183,429	82,785	165,339	-2,513	114,075	-42,781	187,062
신탁계정	43,033	41,955	45,698	15,826	35,515	-12,501	51,223	17,716
증 권	-8,291	18,650	48,065	13,445	29,858	85,722	37,556	-13,605
투 신	184,828	-5,011	25,649	97,260	73,030	163,893	112,258	269,007
중 금	5,651	31,812	53,010	10,350	60,303	79,432	37,691	14,457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김진익 선임연구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7 3/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이 변액보험의 고성장에 따라 전체 생명보험시장이 팽창하고 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이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9.2%의 고성장을 시현

- FY2007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19.2%의 고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고성장세를 보이는데 따른 것임.
- 생명보험은 개인보험이 16.3%의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단체보험도 36.9%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9.7%의 고성장을 시현
 -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이 19.6%의 고성장을 보이면서 전체 손해보험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손해보험전체는 전년동기대비 18.3%의 높은 성장을 나타냄.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4.8	10.0	2.6	6.8	8.1	10.8	13.3	19.7
손해보험	69,259	72,299	77,962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13.1	16.5	12.3	18.3	15.0	14.5	12.9	18.3
합 계	226,395	227,950	258,177	247,856	960,378	253,485	258,072	307,876
	14.2	12.0	5.4	10.1	10.1	12.0	13.2	19.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7 3/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전분기대비 2.0%, 손해보험이 2.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2.4%의 성장세를 나타냄.

- FY2007 3/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증가와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적립 증가로 전분기대비 2.4% 성장한 361조 1,786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증가가 총자산 증가에 기여하면서 전분기대비 2.0% 증가한 297조 3,394억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적립 증가로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63조 8,392억원을 기록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2,460,733	2,559,105	2,657,808	2,731,316	2,731,316	2,827,189	2,914,098	2,973,394
	2.8	4.0	3.9	2.8	14.1	3.5	3.1	2.0
손해보험	508,801	528,852	556,053	569,713	569,713	595,159	613,256	638,392
	3.3	3.9	5.1	2.5	15.6	4.5	3.0	4.1
합계	2,969,534	3,087,957	3,213,861	3,301,029	3,301,029	3,422,348	3,527,354	3,611,786
	2.9	4.0	4.1	2.7	14.4	3.7	3.1	2.4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7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한 21조 5,675억 원으로 20%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개인보험의 경우 증시호황에 따른 변액보험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6.3%의 고성장세를 나타냈으며 3분기 연속 성장률이 증가함.
- 단체보험의 경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며 36.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FY2007 3/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0% 증가한 297조 3,394억 원을 기록하며 300조원 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임.
- 특별계정자산의 증가가 총자산 증가에 기여했으며 총자산 중 특별계정자산의 비중(16.5%)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4.8	10.0	2.6	6.8	8.1	10.8	13.3	19.7
총 자 산	2,460,733	2,559,105	2,657,808	2,731,316	2,731,316	2,827,189	2,914,098	2,973,394
	2.8	4.0	3.9	2.8	14.1	3.5	3.1	2.0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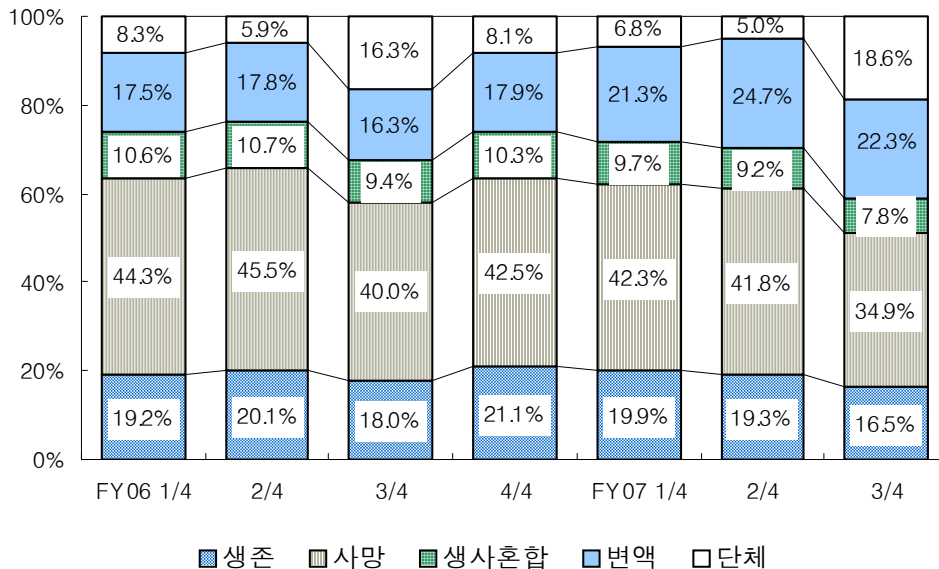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7 3/4분기 생명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변액보험과 단체보험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사망, 생사혼합, 생존보험의 비중은 모두 축소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1%p 하락한 34.9%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40% 미만의 점유율을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은 각각 7.8%, 16.5%의 비중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6%p, 1.5%p 하락하였음.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6.0%p 증가한 22.3%를 기록하면서 계속적인 비중증가 추세를 이어감.
-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비중축소 흐름을 보여 왔으나 FY2007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3%p 증가하면서 18.6%의 비중을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7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한 17조 5,555억 원을 기록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3조 5,507억원을 나타냈으며 사망 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7조 5,176억원을 나타내면서 두 중목 모두 전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 성장하였으나 지난분기의 -2.2% 성장에 비해 감소세가 소폭 축소됨.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3.6% 성장한 4조 8,117억원을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감.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단체보험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특별계정 단체보험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36.9% 성장한 4조 120억원을 기록함.
 -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이어감.
 - 특별계정 중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36.2%로 성장하였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또한 149.1% 성장하면서 단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를 견인함.
- 일반계정의 경우 무배당 저축성 보험의 성장세가 높았으며, 상품 종류별로는 장기건강보험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특별계정의 경우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무배당 저축성보험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8.4%로 무배당보험 전체성장률 6.5%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유배당보험은 -8.7% 성장함.
 - 상품 종류별로는 장기건강보험이 19.0%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종신보험의 경우 7.6% 성장하며 성장세가 꾸준히 개선됨.
 - 특별계정의 경우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각각 82.4%, 55.6% 증가하였고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4.2% 성장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회복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30,188	31,314	32,398	36,266	130,166	34,612	34,008	35,507
	성장률	5.6	6.4	7.5	14.3	8.6	14.7	8.6	9.6
	구성비	19.2	20.1	18.0	21.1	19.6	19.9	19.3	16.5
사망	보험료	69,685	70,840	72,127	72,985	285,637	73,721	73,777	75,176
	성장률	4.9	5.3	5.8	5.3	5.3	5.8	4.1	4.2
	구성비	44.3	45.5	40.0	42.6	43.0	42.3	41.8	34.9
생사 혼합	보험료	16,689	16,636	16,974	17,619	67,918	16,830	16,266	16,754
	성장률	-8.9	-11.0	-6.1	0.6	-6.4	0.8	-2.2	-1.3
	구성비	10.6	10.7	9.4	10.3	10.2	9.7	9.2	7.8
변액 보험	보험료	27,479	27,675	29,406	30,717	115,278	37,097	43,514	48,117
	성장률	127.2	70.7	18.8	-0.1	37.5	35.0	57.2	63.6
	구성비	17.5	17.8	16.3	17.9	17.3	21.3	24.7	22.3
개인 계	보험료	144,041	146,465	150,906	157,587	598,999	162,260	167,565	175,555
	성장률	14.9	11.3	6.9	5.5	9.4	12.6	14.4	16.3
	구성비	91.7	94.1	83.7	91.9	90.1	93.2	95.0	81.4
단체	보험료	13,095	9,186	29,309	13,960	65,550	11,924	8,848	40,120
	성장률	13.6	-7.1	-15.0	23.6	-2.5	-8.9	-3.7	36.9
	구성비	8.3	5.9	16.3	8.1	9.8	6.8	5.0	18.6
합계	보험료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성장률	14.8	10.0	2.6	6.8	8.1	10.8	13.3	19.7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7 3/4분기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개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외국사의 점유율은 하락함.
-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1.4%p 증가한 57.7%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남.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21.1%로 전분기에 비해 2.4%p 감소하였으며 국내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21.2%로 전분기대비 1.0%p 증가함.
 - 상위 3사의 FY2007 3/4분기 점유율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FY2005 3/4분기, FY2006 3/4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0.7%p, 0.1%p 증가했던 것에 비해 상승폭이 크며 이는 단체보험의 호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0.1372를 나타내어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3개사	63.6	62.4	62.5	60.7	62.3	58.4	56.3	57.7
외 국 사	20.1	20.7	18.7	21.0	20.1	22.1	23.5	21.1
국내중소형사	16.3	16.9	18.8	18.3	17.6	19.5	20.2	21.2
허핀달지수	0.1614	0.1546	0.1578	0.1486	0.1554	0.1389	0.1326	0.1372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7년 12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7 3/4분기 당기순이익은 준비금전입액이 20%가량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38.3% 증가한 1조 7,093억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수지와 기타수지는 각각 14.4%, 112.5% 증가한 반면 보험영업수지가 보험금지급률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3.0% 감소하면서 총수지는 13.6% 감소함.
- 그러나 준비금전입액이 전년동기대비 19.6% 감소하면서 총수지 감소를 상쇄하며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여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252,867	383,363	520,529	133,936	266,664	403,182
	투자영업	62,531	95,061	130,924	38,289	74,675	109,810
	기타	6,685	10,746	16,807	5,067	10,422	16,583
	소계	322,083	489,175	668,260	177,293	351,761	529,575
총 비 용	보험영업	203,548	307,943	418,740	105,648	224,377	367,748
	투자영업	9,367	14,586	19,616	5,487	10,741	17,750
	기타비용	3,246	5,054	6,817	1,906	3,836	4,492
	소계	216,161	327,583	445,173	113,040	238,954	389,990
수 지 차	보험영업	49,319	75,420	101,789	28,289	42,287	35,434
	투자영업	53,164	80,481	111,308	32,802	63,934	92,060
	기타	3,439	5,691	9,989	3,162	6,586	12,091
	소계	105,922	161,592	223,087	64,253	112,807	139,585
준비금전입		95,226	144,802	197,252	53,891	94,186	116,423
법인세		2,895	4,433	6,360	2,727	4,848	6,068
당기순이익		7,800	12,357	19,475	7,634	13,774	17,093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순이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순이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7 3/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60.9%로 전년동기대비 13.2%p 증가하였고, 사업비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17.2%를 기록함.
- 개인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은 전 보험 종목에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8.5%p 증가한 66.7%를 기록함.
 - 사망보험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5.4%p 증가한 반면 생존보험, 변액보험은 모두 20%p 가량 증가하였음.
 - 특히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저축성상품의 만기보험금 증가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두 분기 연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102.1%p 증가한 212.5%를 기록함.
- FY2007 3/4분기 신계약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18.1%를 나타냈고, 해약률은 0.1%p 감소한 8.0%를 나타냄.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지급률	52.7	55.1	47.7	56.5	52.8	52.2	60.2	60.9
- 생 존	60.8	66.7	62.5	61.0	62.7	60.0	75.0	84.3
- 사 망	37.2	40.9	38.4	40.3	39.2	37.4	40.3	43.8
- 생사혼합	108.3	109.9	110.4	104.3	108.2	108.4	138.5	212.5
- 변 액	12.1	14.7	20.9	26.3	18.8	30.1	35.0	38.8
- 개 인 계	45.6	49.3	48.2	49.5	48.2	47.9	55.5	66.7
사 업 비 율	17.8	18.8	17.1	19.2	18.2	17.8	18.9	17.2
신 계 약 률	5.5	11.5	17.7	24.5	24.5	5.4	11.6	18.1
해 약 률	3.1	5.8	8.1	10.6	10.6	2.8	5.4	8.0

주 : 1)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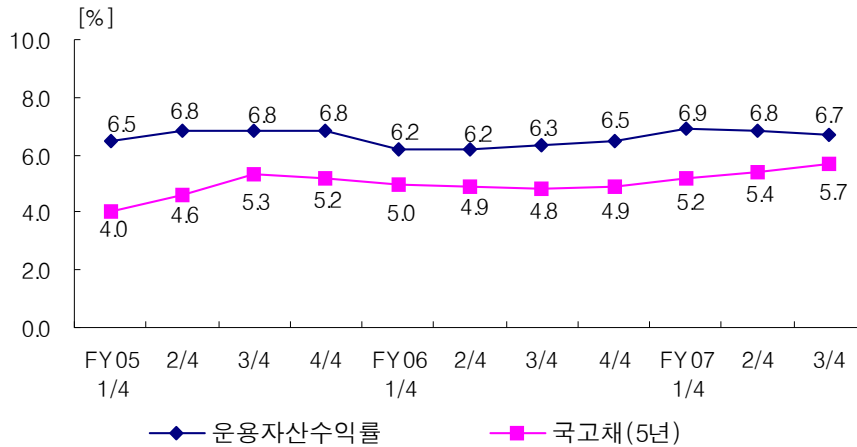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7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6.7%를 기록함.
- 항목별로는 유가증권과 부동산 수익률이 각각 0.7%p, 0.4%p 상승하였으며, 대출채권의 수익률은 0.2%p 하락했음.
- 유가증권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7%p 증가한 6.2%를 기록하였으며 단기매매증권과 지분법투자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유가증권 수익률 증가에 기여함.
- 특별계정자산 수익률은 11.2%를 기록하였으나 FY2007 1/4분기 이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3/4		4/4		1/4		2/4		3/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4	4.3	2.1	4.8	2.2	4.6	2.5	4.4	3.2	4.2
유 가 증 권	59.7	5.5	60.5	5.7	60.6	6.6	60.4	6.4	59.4	6.2
○ 단기매매증권	2.3	6.0	2.1	6.2	2.1	18.4	2.0	14.6	1.9	12.1
- 주 식	0.1	19.0	0.1	21.4	0.2	97.7	0.2	75.0	0.2	56.6
- 채권 등	1.1	5.8	1.1	6.0	1.0	11.5	1.0	9.0	0.8	8.5
- 수익증권	1.0	4.7	0.9	4.8	1.0	14.3	0.9	12.1	0.9	9.7
○ 매도가능증권	46.7	5.4	47.7	5.7	47.7	5.2	47.5	5.5	46.1	5.6
- 주 식	4.9	2.2	4.7	5.2	5.1	3.2	5.2	3.6	5.2	3.2
- 채권 등	38.5	5.7	39.7	5.7	39.2	5.4	38.5	5.5	37.1	5.7
- 수익증권	3.2	6.6	3.3	6.4	3.4	6.2	3.7	8.6	3.8	7.9
○ 만기보유증권	9.9	5.9	9.9	6.0	10.0	5.6	10.0	5.7	10.5	5.7
- 채권 등	9.9	5.9	9.9	6.0	10.0	5.6	10.0	5.7	10.5	5.7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자본법적용투자주식	0.8	5.0	0.8	5.4	0.9	66.1	0.9	42.0	0.9	30.8
대 출 채 권	22.0	9.2	21.6	9.3	21.7	8.8	21.8	8.9	22.7	9.0
부 동 산	4.2	3.8	4.2	4.4	4.1	4.0	4.1	4.1	4.1	4.2
운 용 자 산 계	88.3	6.3	88.4	6.5	88.6	6.9	88.8	6.8	89.4	6.7
비 운 용 자 산	11.7	2.6	11.6	2.6	11.4	3.2	11.2	2.6	10.6	2.1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86.1)	5.9	100.0 (85.6)	6.1	100.0 (84.7)	6.5	100.0 (83.8)	6.3	100.0 (83.5)	6.2
특 별 계 정 자 산	13.9	6.5	14.4	6.7	15.3	15.6	16.2	13.9	16.5	11.2
총 자 산	100.0	6.0	100.0	6.1	100.0	7.8	100.0	7.5	100.0	7.0
총 자 산 규 모	2,657,813		2,731,316		2,827,112		2,914,092		2,973,394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7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임직원, 설계사,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모두 줄고 대리점의 비중은 증가함.

- 임직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0%p 하락한 19.9%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의 11.5%에 비해서는 8.4%p 증가함.
- 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6%p 감소한 42.2%를 기록하였으며, 방카슈랑스 비중 또한 전년동기대비 1.0%p 감소한 26.7%를 나타냄.
- 반면 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5.3%p 증가한 11.3%를 기록하면서 FY2007 3/4분기 이후 계속적인 비중확대 추세를 이어나갔으며, 두 분기 연속 두자리수 비중을 유지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 직 원	21.9	20.0	22.9	24.7	22.5	12.3	11.5	19.9
설 계 사	43.5	43.5	42.8	32.8	40.1	43.0	46.6	42.2
대 리 점	6.9	6.0	6.0	6.8	6.4	8.2	10.0	11.3
중 개 사	0.0	0.0	0.1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27.7	30.5	27.7	35.7	30.7	36.5	31.8	26.7
기 타	0.0	0.0	0.5	0.0	0.1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689	20,046	20,958	26,540	88,233	23,630	26,322	31,783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7 3/4분기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각각 27,105명, 139,510명, 10,667개를 기록함.
- 임직원 수는 중소기업사와 외국사에서 각각 4.3%, 2.2% 증가하였으나 대형 3사의 경우 2.1%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1% 증가하였음.
 - 설계사 수는 남성설계사 수가 8.0%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분기대비 2.0% 증가하였고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에서 각각 5.3%, 5.0% 증가하였음.
 - 대리점 수 또한 국내중소형사(5.1% 증가)를 중심으로 대형 3사, 외국사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6% 증가하였음.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6,432	26,604	26,868	26,848	27,070	27,105
설 계 사	127,346	130,140	131,850	135,416	136,772	139,510
대 리 점	10,341	10,110	9,746	10,048	10,400	10,667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억 선임연구원, 김세중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7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한 9조 2,201억원을 기록하였음.
- FY2006 1/4분기 이후 20%대 전후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은 FY2007 3/4분기 분기별 보험료가 4조원을 돌파하였음.
- 자동차보험에서는 전년도 손해를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 반영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4.1%의 성장률을 기록해 3분기 연속 10%대의 성장을 보임.
- 일반손해보험은 해상 및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과 보증보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은 2.8%로 미미한 성장을 보임.
- FY2007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4.1% 성장한 63조 8,392억원을 기록하였음.
-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증가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거수실적에 따른 준비금 적립 증가와 투자수지 확대에 기인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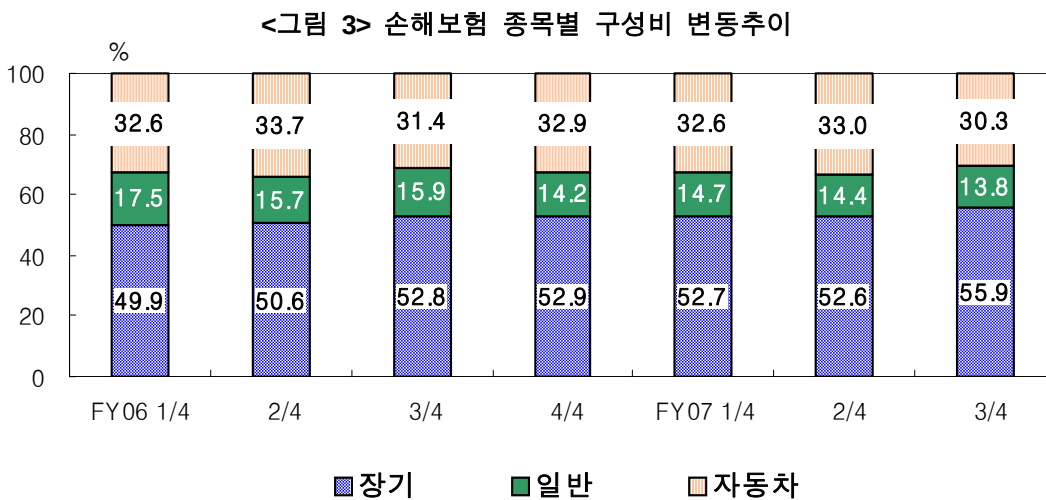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72,299	77,962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16.5	12.3	18.3	15.0	14.5	12.9	18.3
총 자 산	528,852	556,053	569,713	569,713	595,159	613,256	638,392
	3.9	5.1	2.5	15.6	4.5	3.0	4.1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7 3/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이 55.9%, 자동차보험 30.3%, 일반손해보험 13.8%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을 합계한 총 비중은 전분기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Y2007 3/4분기 퇴직보험의 보험료 증가세 확대에 따른 것임.
- 장기손해보험 부문의 상대적인 팽창세에 따라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7%p, 0.6%p 감소하였음.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7 3/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7,9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성장하였음.
- 자동차보험은 지난 해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계속 반영되고 있고, 수입차 신규등록

증가세 등 차량의 고급화에 따른 대당보험료 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음.

□ FY2007 3/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통합형 보험의 높은 성장세와 상해 및 저축성부문의 꾸준한 수요 지속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9.6% 성장한 4조 1,650억원을 기록하였음.

○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통합형 보험이 45.1%, 상해보험이 25.3%로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통합형 보험의 경우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 저축성 부문은 20.6%, 질병 부문은 12.8% 성장한 반면, 운전자보험 및 재물부문의 성장률은 각각 3.9%, 4.5%의 성장에 그침.

○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6.5% 성장하였으며 원수 대비 초회성장이 현저히 밀도는 현상이 FY2007 1/4분기 이후 3분기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년간 급성장세를 보이던 통합형 보험의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반전된 데 주로 기인함.

□ FY2007 3/4분기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878억원으로 보험요율 인하 및 건설·투자부문의 성장 둔화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음.

□ FY2007 3/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1,4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적하보험 및 선박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6%, 4.1%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운송 및 항공보험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FY2007 3/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한 2,602억원을 기록하였는데, 모기지신용보험(MCI)의 판매 감소 및 상업신용보험료 감소 등으로 FY2007 1/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FY2007 3/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7,4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의 양호한 성장을 시현함.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보험은 기업성보험의 성장 감소로 1.8%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상해보험은 단체상해보험의 실적 호조로 고성장(28.2%)을 지속함.

○ 기술보험은 건설공사보험에서의 성장세 부진을 조립보험의 성장세 확대에 극복하여 1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책임보험은 전체적으로 5.6% 성장하였음.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16	902	758	3,132	743	679	878
	성장률	-4.7	-1.2	-3.5	-3.4	-1.8	-5.2	-2.6
	구성비	1.0	1.2	1.0	1.1	0.9	0.8	1.0
해 상	보험료	1,604	1,304	1,314	6,323	1,735	1,783	1,486
	성장률	13.6	1.9	10.9	19.9	-17.4	11.2	13.9
	구성비	2.2	1.7	1.7	2.1	2.2	2.2	1.6
자동차	보험료	24,344	24,444	25,106	96,492	25,838	26,913	27,900
	성장률	10.3	9.4	13.6	9.8	14.3	10.6	14.1
	구성비	33.7	31.4	32.9	32.6	32.6	33.0	30.3
보 증	보험료	2,665	3,073	2,718	11,428	2,424	2,341	2,602
	성장률	11.5	10.1	3.4	13.5	-18.4	-12.2	-15.3
	구성비	3.7	3.9	3.6	3.9	3.1	2.9	2.8
특 중	보험료	6,159	6,813	5,872	24,987	6,584	6,728	7,455
	성장률	7.2	8.8	14.0	9.1	7.2	9.2	9.4
	구성비	8.5	8.7	7.7	8.4	8.3	8.2	8.1
해 외 원보험	보험료	205	278	184	823	191	254	298
	성장률	43.1	69.9	6.4	35.2	22.4	23.9	7.1
	구성비	0.3	0.4	0.2	0.3	0.2	0.3	0.3
장 기	보험료	33,352	34,814	37,072	136,802	38,628	39,850	41,650
	성장률	21.6	21.2	23.9	21.5	22.4	19.5	19.6
	구성비	46.1	44.7	48.6	46.2	48.7	48.8	45.2
개 인 연 금	보험료	1,884	2,119	2,136	7,975	2,265	2,388	2,629
	성장률	9.8	18.5	19.4	14.3	23.4	26.8	24.0
	구성비	2.6	2.7	2.8	2.7	2.9	2.9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1,370	4,216	1,149	7,868	892	724	7,303
	성장률	234.5	-18.3	52.8	2.1	-21.2	-47.2	73.2
	구성비	1.9	5.4	1.5	2.7	1.1	0.9	7.9
계	보험료	72,299	77,962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성장률	16.5	12.3	18.3	15.0	14.5	12.9	18.3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7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은 대형사의 비중이 소폭 축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기대비로는 일반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95.5%, 1.5%를 기록하여 1.0%p, 0.1%p씩 상승한 반면, 전업사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보험료 성장 감소로 점유율은 3.0%를 나타내며 그 비중이 1.1%p 축소되었음.
 - 한편, 상위 4개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한 70.4%로 나타났는데 이는 FY2003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비중임.
 - 온라인 단종보험회사의 경우 적극적 마케팅 및 가격정책으로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한 3.6%의 비중을 보였음.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대형사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0.1503의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연간	1/4	2/4	3/4
점유비	상위4개사	70.8	70.9	71.0	71.0	70.6	70.7	70.4
	일반사 계	94.6	94.5	94.6	94.6	95.4	95.5	95.5
	온라인단종사	2.7	2.8	3.0	3.0	3.5	3.6	3.6
	전 업 사	4.1	4.1	4.0	4.0	3.1	3.0	3.0
	외 국 사	1.4	1.4	1.4	1.4	1.5	1.5	1.5
허 핀 달 지 수		0.1529	0.1532	0.1531	0.1531	0.1507	0.1518	0.1503

주 : 1) 일반사 계에는 온라인단종사(교보AXA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6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동경해상일동 7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총비용〉

- FY2007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840억원 늘어난 1조 4,477억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주식시장 상승 등 자산운용여건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42.5% 증가한 2조 1,676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익은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의 높은 보험료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한 22조 9,71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증가 등으로 보험영업비용이 12.4% 증가한 23조 111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395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수지는 4,1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영업 수지차의 성장세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은 9,988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127,173	194,983	266,230	73,382	149,896	229,715
	투자영업	12,926	19,984	28,556	9,213	18,494	27,232
	기타	4,198	10,778	12,747	910	1,395	10,463
	소계	144,297	225,745	307,533	83,505	169,785	267,410
총 비 용	보험영업	130,775	201,481	274,656	72,948	150,095	230,111
	투자영업	3,257	4,778	6,161	1,988	3,841	5,556
	기타비용	3,811	8,617	10,543	1,387	2,109	11,656
	소계	137,843	214,876	291,360	76,323	156,046	247,323
수 지 차	보험영업	-3,602	-6,498	-8,426	434	-199	-395
	투자영업	9,669	15,207	22,395	7,225	14,652	21,676
	기타	386	2,161	2,204	-477	-714	-1193
	소계	6,453	10,869	16,173	7,182	13,739	20,088
법 인 세		1,864	3,233	5,501	1,992	3,679	5,611
당기순이익		4,589	7,637	10,673	5,189	10,060	14,477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7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3.4%p 감소한 98.9%를 기록함.
- 사업비율과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2.9%p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합산비율도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나타냄.
- FY2007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 개선은 주로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힘입은 것으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화재, 해상, 특종 부문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경우, FY2007에 접어들면서 보험료 현실화 및 고급차 증가에 따른 대당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손해율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은 공장 및 주택물건의 손해율이 악화되었고, 해상보험은 항공 및 선박 부문의 손해율 악화가 해상 전체 손해율에 영향을 미쳤음. 특종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1/4	2/4	3/4
손해율	화재보험	40.7	40.2	39.6	40.9	47.0	44.0
	해상보험	50.3	46.4	52.1	47.3	54.8	58.7
	자동차보험	78.9	79.5	79.0	73.6	73.7	73.9
	보증보험	10.5	21.5	23.4	28.0	24.3	17.8
	특종보험	55.8	56.8	55.3	54.3	56.5	58.2
	해외원보험	40.4	36.7	44.7	26.8	29.4	30.6
	장기보험	85.3	84.3	83.9	81.8	81.5	81.3
	개인연금	119.8	118.9	125.4	115.8	116.0	116.4
	전 체	78.7	78.8	78.6	75.8	75.9	75.9
사업비율		23.2	23.5	23.8	22.4	23.0	23.0
합산비율		101.9	102.3	102.3	98.2	98.9	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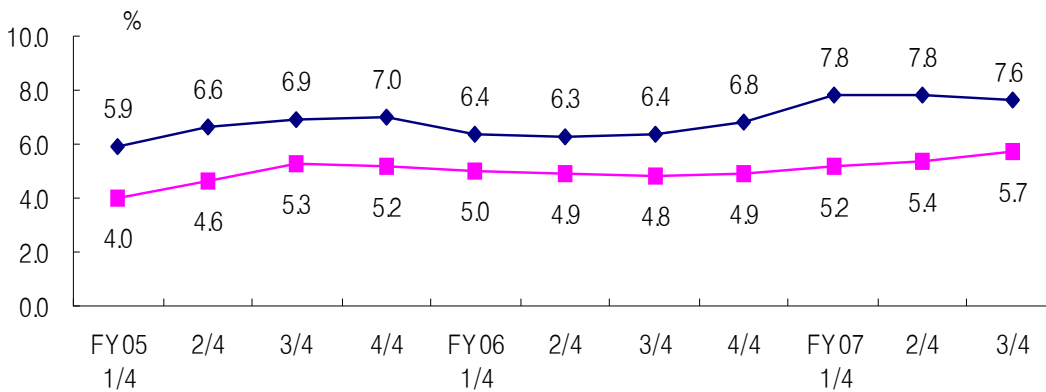
주 :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7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분기대비 0.2%p 감소한 7.6%를 기록하였음.
- 단기매매증권의 수익률은 전분기대비 2.8%p 감소한 12.5%를 기록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의 수익률도 7.9%를 기록하면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하였음.
-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0.6%p 상승한 5.9%를 차지하였으며, 수익률은 4.9%로 전분기와 동일하게 나타남.
-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수익률도 전분기대비 각각 0.3%p, 0.1%p 하락한 8.4%, 3.4%를 기록하였음.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투자영업수익) × (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채권의 비중이 여전히 커 손보사들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전략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 및 수익증권의 운용 실적에 있어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하였음.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과 주식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익증권의 비중은 확대되었음.

- 수익률에 있어서는 채권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주식과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o 대출채권의 경우 일반계정 자산의 18.3%를 차지하여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반면, 수익률은 0.3%p 감소한 7.5%를 기록하였음.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3.9%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1/4		2/4		3/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5	4.7	5.0	4.6	4.8	5.0	5.3	4.9	5.9	4.9
유 가 증 권	54.9	6.4	54.6	7.1	55.0	8.8	54.5	8.7	53.5	8.4
o 단기매매증권	6.1	8.1	6.2	7.5	5.7	16.7	5.3	15.3	5.0	12.5
- 주 식	0.3	45.9	0.3	48.7	0.2	157.7	0.4	143.2	0.3	112.6
- 채 권 등	4.0	7.5	4.0	6.8	3.5	13.8	3.3	11.0	2.8	10.5
- 수익증권	1.8	3.9	1.9	4.0	2.0	6.5	1.6	6.5	2.0	5.7
o 매도가능증권	45.0	6.1	44.6	7.0	45.8	7.8	45.6	8.0	45.1	7.9
- 주 식	6.7	7.0	5.9	13.4	6.6	19.8	6.5	20.6	6.5	17.9
- 채 권 등	36.4	6.3	36.3	6.4	36.6	6.1	36.1	6.4	35.7	6.1
- 수익증권	2.0	5.8	2.4	6.5	2.7	8.6	3.0	8.5	2.9	11.1
o 만기보유증권	3.1	6.2	2.9	6.1	2.7	6.1	2.6	5.9	2.4	5.9
- 채 권 등	3.0	6.2	2.9	6.1	2.6	6.1	2.6	5.9	2.4	5.9
o 투자주식	0.8	14.6	0.9	11.4	0.9	13.7	0.9	15.0	1.0	12.6
대 출 채 권	17.9	7.8	18.2	7.8	18.0	7.3	18.1	7.4	18.3	7.5
부 동 산	6.7	3.4	6.6	3.5	6.3	3.5	6.2	3.5	6.2	3.4
운 용 자 산 계	84.0	6.4	84.3	6.8	84.2	7.8	84.1	7.8	83.9	7.6
비 운 용 자 산	16.0	-	15.7	-	15.8	-	15.9	-	16.1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5.4	100.0	5.7	100.0	6.6	100.0	6.6	100.0	6.4
	(96.1)	-	(96.2)	-	(96.3)	-	96.5	-	96.6	-
특 별 계 정 자 산	3.9	-	3.8	-	3.7	-	3.5	-	3.4	-
총 자 산	100.0	5.2	100.0	5.5	100.0	6.4	100.0	6.4	100.0	6.2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7 3/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중 회사직급(T/M, C/M 포함)과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대리점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6%p 감소한 13.0%를 나타낸 반면, 대리점은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한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4.6%를 기록하였으나, 3/4분기에는 은행 결산시점(12월말)과 겹쳐 은행에서의 판매 독려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전분기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0.7%p 감소하였음.
 -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거수된 원수보험료 비중은 34.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Y2007 1/4분기 이후 동일한 비중을 지속하고 있음.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1/4	2/4	3/4
회사직급	18,875	29,029	36,508	9,369	19,053	26,704
	13.6	13.6	12.7	11.9	12.0	13.0
보험설계사	49,034	74,807	102,379	27,197	55,348	71,502
	35.3	35.2	35.6	34.7	34.7	34.7
대 리 점	63,081	96,627	131,298	36,592	74,176	95,569
	45.4	45.4	45.6	46.7	46.6	46.4
중개사	1,185	1,809	2,470	582	1,290	1,734
	0.9	0.9	0.9	0.7	0.8	0.8
방카슈랑스	6,317	9,579	13,907	4,334	8,721	9,585
	4.5	4.5	4.8	5.5	5.5	4.6
공동인수	564	949	1,398	334	754	1,058
	0.4	0.4	0.5	0.4	0.5	0.5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7 3/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에서는 임직원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생산성이 하락한 반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임직원의 경우 FY2007 3/4분기 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11.0% 감소한 반면,
-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경우 보험모집조직의 전문화·정예화 추세 및 최근 개인연금 등의 판매 증가로 월평균 모집액 향상이 지속되며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산성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8%, 5.0% 상승함.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5,956	26,067	25,849	25,969	26,602	26,957
	72,718.1	111,364.2	141,235.8	36,077.1	71,624.0	99,061.7
보험설계사	74,823	76,390	73,408	72,045	71,299	71,742
	65,532.8	97,928.2	139,465.3	37,750.5	77,627.6	99,665.5
대 리 점	45,381	45,038	44,275	43,818	42,493	42,423
	139,002.4	214,545.7	296,551.9	83,510.0	174,561.5	225,276.1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지재원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애견보험 판매 활성화 기대

1. 배 경

사회 전반에
걸쳐 애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애견보험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애완동물이 가족(또는 반려동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애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동법의 주요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동물 소유자의 등록 의무화, 등록 동물에 인식표 부착, 학대 및 유기 금지 등이며 '08.1.27일부터 시행

※ 등록대상 동물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동물보호법 시행령 §)

○ 이에 따라 애견의 동물병원 입·통원 치료비 발생, 애견에 의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애견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애견보험의 판매활성화가 기대됨.

2. 애견보험 주요내용

애견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사망시 장례비
지급

□ 애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애견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동물병원 입·통원치료비, 애견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애견 사망시 장례비 등임.

○ 통원의료비는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입원의료비는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보상되며 연간 최대 보상한도는 500만원임.

○ 또한 애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최대 2천만원 한도, 장례비는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함.

□ 그러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 애견을 범죄행위 등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됨.

* 애견 급성췌장염 등 임상수의학상 질병으로 진단된 것

** 애견을 이용한 절도행위 등을 하다가 발생한 애견의 사고 등

- 보험료 수준은 약 30만원~60만원(1마리당, 보험기간 1년 기준)
가량으로 견종과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보험료 예시 : 진돗개(중형견) 3세 보험료 수준 310,000원 ~ 403,000원
(회사별, 보장내역별로 상이)

3. 애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가입대상은
한국 가정에서
사육되고 생후
6개월~8세
이하의 애견임

- 보험가입대상은 대한민국내 가정에서 사육·관리되고 국내/해외에서 인정되는 견종*으로서 생후 6개월 이상 8세 이하 애견임.

- * 치와와, 푸들, 시츄, 차우차우, 진돗개 등 일반적 견종 분류
- o 매매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와 구조견 등 특수한 목적의 개,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 등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 매매를 목적으로 한 판매점 또는 브리더(Breeder: 개를 전문으로 키우는 사람) 등은 가입 불가

4. 기대효과

건전한 애견
문화 발전으로
애완산업의
성장에 기여

- 애견보험 가입이 활성화되면 연간 500억원(대한 수의사회 추정)
가량으로 추산되는 동물병원비 등 관련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임.

- o 건전한 애견문화의 발전으로 애완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애완산업 규모 : 1조원 이상 (월간조선 2007.5월호)

<참고> 애견보험 해외사례 및 국내 유사보험과의 비교

- 애완동물보험(Pet Insurance) 해외사례
- o 애완동물보험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보장내역은 애완동물의 상해·질병 등으로 그 범위가 국내의 애견보험과 유사하나, 보험가입대상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등으로 그 범위가 넓은 편임.

<표 1> 애완동물보험 해외사례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보험가입 대상	개, 고양이, 토끼 등	개, 고양이, 새, 말, 토끼, 햄스터 등	개, 고양이 등
보장내역	애완동물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애완동물의 상해, 질병, 사망 등	애완동물의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

□ 국내 유사보험과의 비교

현재
애견보험과
유사한 동물
보험이 판매 중

- 국내의 경우 애견보험과 유사한 동물보험이 판매중이며 보험 가입대상은 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포함하나, 보장내용은 사망으로 제한

<표 2> 애견보험과 동물보험 비교

구 분	애견보험	동물보험
보험가입 대상	개	개, 말, 돼지 등
보장내역	애완동물의 상해, 질병, 사망, 배상책임 등	피보험동물의 사망*
보장범위	□치료비 : 연 500만원 한도 □배상책임손해 : 최대 2천만원 한도 □장례비 : 20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시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결정)

* 피보험동물이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시 선택 하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예: 말1억6천, 돼지40만원 등).

* 자료 : 금감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보도자료, 2008.1.22.

(박정희 연구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1. 개 요

산자위 대표
발의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

- 우리나라는 OECD회원 국가 중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 1위('01년), 어린이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 3위('04년) 등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의 대표발의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07.1.26. 공포)하여 '08.1.27.부터 시행
- 동 법에 의해 정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손보사들은
동법을 기초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예정임

2. 법상 보험관련 주요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
- 보험가입 의무화(법 §1 제1항)

-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하며, '07.12월 기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총 61,427개소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07.12월 기준으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유일(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안전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할 예정)

<표 1> 보험가입 의무화 배경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 법적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가 사인인 경우에는 민법,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하지만 사인인 관리주체의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고,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② 보험가입자(법 제1항, 영 제2항 별표2)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61,427+1)

<표 2>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장소에 설치된 경우의 해당 놀이시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도로의 휴게시설, 의료기관, 식품접객업 영업소, 목욕장업의 영업소 등에서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어린이 놀이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가입시기는
놀이시설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보험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③ 어린이의 범위(법 §1 제1항)

- o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연령제한 없음)

④ 보험가입 시기(영 §3 제2항)

- o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o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⑤ 보상하는 손해(법 §1)

- o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

⑥ 최저 보상금액(법 §1 제2항 , 영 §3 제3항 및 별표7)

- o (사망) 1인당 8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장래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 보상
- ※ 어린이의 장래 상실수익액은 일용근로자의 임금(월 120만원 내외)과 취업가능년한 60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사망할 경우 과실을 상계하더라도 대부분 보상한도인 8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
- o (부상) 1인당 급별 한도(1급 1천5백만원~14급 60만원)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보상
- o (후유장해)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1급 8천만원~14급 500만원)로 약정액 지급
- o (재산상의 손해) 1사고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 보상

⑦ 보험 미가입시 벌칙(법 §1 제1항, 영 §8 제3항 및 별표9)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⑧ 법 시행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 유예(법 부칙 §)

-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최대 4년간 보험가입 유예

※ (법 부칙 §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이하 생략).

3.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시장규모

2007년 12월

기준으로 놀이

시설은 총

62,530개소임

- 어린이 놀이시설(관리주체) 현황

- '07.12월 기준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62,350개소이며, 동 시설 관리주체 기준으로는 총 61,427개소임.

<표 1>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 현황(07.12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개소	비 고
실외	어린이공원	6,507	-
	아파트내 놀이터	33,201	-
	학교내	6,350	-
	휴게소	89	-
	소계	46,147	-
실내	유통업체, 음식점, 찜질방, 병원내 놀이시설	1,412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내 놀이시설		14,791 (13,868)	()은 관리주체 기준
합 계		62,350 (61,427)	()은 관리주체 기준

* 출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의뢰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조사

□ 시장규모

시장규모로는
보험료 기준
연간 128억원
내외로 추정

○ 시장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128억원 내외로 추정

- 실외 시설 : 46,147개 × 240,000원 = 111억원

- 실내 시설 : 1,412개 × 603,000원 = 9억원

- 유치원 등 : 13,868개 × 59,000원 = 8억원

※ (시장규모 추정기준)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은 495m², 실내 어린이놀이 시설은 165m², 유치원 등의 놀이시설은 정원 60명 기준의 보험료 적용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험료(연간) 수준

<표 1>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구 분	330m ² 이하	495m ²	825m ²	1,155m ²	1,485m ²	1,650m ² 이상
대 인	188,050	235,063	282,076	305,581	329,089	352,594
대 물	4,114	5,143	6,171	6,686	7,200	7,714

(기준 : 대인은 1인당 8,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200만원, 단위 : 원)

<표 2>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구 분	165m ² 이하	330m ²	495m ²	825m ²	990m ²	990m ² 초과 (1m ² 당 추가보험료)
대인	570,937	884,821	1,157,766	1,662,796	1,894,881	1,157
대물	31,820	46,066	60,311	84,450	94,343	66

(기준 : 대인은 1인당 8,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200만원, 단위 : 원)

<표 3>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산출기초	대인	대물
1인당	977	2.3

(기준 : 대인은 1인당 8,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200만원, 단위 : 원)

* 자료 : 금감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보도자료, 2008.1.22.

(박정희 연구원)

3. 2007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1. 개 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위원회 운영
실적 결과 발표

- 금융감독기구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대책('06.11)」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07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 15개 손해보험사가 '07.4.23.부터 상호협정에 의해 공동운영(금감위 인가 '07.3.30)

- 구상금분쟁 해결기간이 단축되고 심의결과 수용비율 및 비용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등 손해보험회사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자동차보험사고시 구상금(求償金)이 발생하는 이유

- | |
|---|
| ① 일방과실 사고 : 구상금 미발생(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지급)
② 쌍방과실 사고 : 가해차량(피보험자 보험가입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실이 있는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구상금)을 청구하게 됨에 따라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됨. |
|---|

운영실적은
심의상정건수는
4,018건이며,
처리건수는
2,623건임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07.4.23 ~ '07.12.31)은 심의상정건수는 4,018건, 처리건수는 2,623건이며, 처리비율은 65.3%임.

- '07년 12월말까지 총 4,018건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2,623건(65.3%)을 처리 완료하였음.

2. 세부내용

- ① 심의대상 사고유형 : 차로변경 38%, 추돌사고 28% 등

- 구상금분쟁심의 사건을 사고유형별로 분류하면 차로변경 사고(38%), 추돌사고(28%), 신호기 있는 교차로사고(12%) 순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구상금분쟁심의 사고유형별 사건

사고 유형	같은방향 진행차간 사고			다른 방향 진행차간 사고				교차로 사고		계
	차로 변경	추돌 사고	추월 사고	직진 對 회전차	역주행	중앙선 침범	중앙선 없는곳	신호기 있는곳	신호기 없는곳	
건수	997	734	52	210	105	53	52	315	105	2,623
비율	38%	28%	2%	8%	4%	2%	2%	12%	4%	100%

② 심의결과 수용비율 : 98.3%

심의결과

수용비율은

98.3%로 나타나

소송예방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2,623건 중 분쟁당사자(쌍방 보험회사)가 수용한 비율은 98.3%(2,578건)으로, 수용비율이 매우 높아 소송예방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한 건의 경우 보험회사는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보험가입자가 향후 보험료 할증적용 등의 이유로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③ 분쟁해결기간 : 50일로 소송(180일)에 비해 3.6배 단축

분쟁해결기간이

50일로 소송

180일에 비해

3.6배 단축됨

□ 그동안 자동차보험 구상금청구 소송시 평균 180일이 소요되었으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기간은 평균 50일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 불필요한 소송* 예방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 등 자동차보험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구상금관련 소송은 과거 매년 약 12,000건 발생

※ 2008. 1월부터 On Line 심의청구시스템 시행을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

④ 자동차보험 사업비 절감 : 연간 108억원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연간

108억원이 절감

□ 구상금청구 소송비용이 건당 평균 108만원 소요되었으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비용은 건당 평균 18만원으로 연간 108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 소송 및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건당 소요비용 비교

(단위 : 만원)

소송			구상금분쟁심의		
소송비용*	인건비	계	심의수수료**	인건비	계
15	93	108	4	14	18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합계, ** 청구금액별 차등적용(3~10만원)

⑤ 5대 자동차공제조합 참여

'07.12월부터 5대
자동차공제조합
상호협정에
참여

□ 그동안 공제조합은 상호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보험사와 공제조합가입 차량 간의 쌍방과실사고는 동 위원회에서 처리가 곤란하였으나, '07.12월부터는 5대 자동차공제조합*이 동 상호협정에 참여하게 되었음.

* 5대 공제조합 : 화물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 공제가입자*도 자율분쟁해결 혜택을 입게 되며,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간 소송비용(사업비) 절감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5대 공제 가입대수는 43만대로 전체 보험□공제가입대수(1,540만대)의 2.8%

3. 향후 계획

향후 손보사의
자율분쟁조정체
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감독기구는 손해보험회사간 자율분쟁조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

*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등 강구

○ 동 제도 운영으로 인한 비용절감액은 보험료 인하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임.

[참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구상금분쟁심의
위원회는 15개
손보사 및 5대
자동차공제로
구성

- ☐ 목적 : 구상금분쟁소송의 예방을 통한 자동차보험금 신속지급 및 보험업계의 사업비 절감 등
- ☐ 협정당사자 : 15개 손해보험사, 5대 자동차공제(운영기관: 손보협회)
- ☐ 협정체결근거 : 금융감독위원회 인가('07.3.30., 보험업법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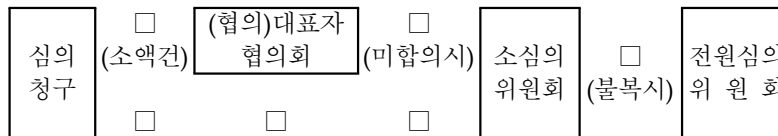
<표 4> 조직 구성 및 기능

체결근거는
보험업법 하에
금감위에서
인가

조 직	구 성	기능 및 운영
전원심의 위 원 회	변호사 8인 손보협회 담당임원 1인 (의결권 없음)	- 소심의위원회의 미합의건 심의결정 - 재심의 요청건 심의결정 - 중요사건에 대한 심의결정
소 심 의 위 원 회	변호사 2인 (복수설치 가능)	-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결정 -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 ☐ 업무처리절차 : 협정기관(각보험회사 등)의 협의대표자간 합의, 소심의위원회 및 전원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

<표 5> 업무 처리 절차



- ☐ 운영경과

- o 15개 전 자동차보험회사의 상호협정 인가 취득('07.3.30)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업무 개시('07.4.23) → 심의대상 범위 확대('07. 7. 1) → 5대 자동차공제 협정참여('07.12.8)

* 자료 :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보도자료, 2008.1.24.

(박정희 연구원)

보험동향 2008년 봄호

4.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예고

'08.3.22부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이
시행

□ (개정법 내용) 2008년 3월 2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2007년 12월 21일 개정, 법률8701호)이 시행될 예정

- 개정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기관 등)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경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사용 가능한 동의 방식을,
 - 현재의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방식 이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1항).

□ (시행령 개정내용)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동의 방식을 규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하였음.

개정령의 안전·
신뢰성을
감안하여 신용
정보주체의
확인수단을
추가

- 개정령(안 제12조 제2항)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을 입력 또는 제공하는 동의 방식을 추가

- ① 당해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
- ② 당해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 단문메세지를 통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발급받은 비밀번호
- ③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 수단

□ (기대효과) 정보통신매체가 발달하고 다양화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다양한 동의수단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됨.

- 금융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됨.

* 모바일 신용카드 다운로드시 무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표명

* 전화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동전화 단문메세지 발급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 표명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로

개인동의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취득

- o 금융기관 등은 개인 동의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

* 종전에는 온라인(전화포함)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오프라인으로 수령하여야 했음.

- ☐ (향후계획)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 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

* 자료 : 재경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008.2.1.

(박정희 연구원)

5.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내용 개선을 약관에 반영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오는 2008. 4. 1.부터 시행할 계획임.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급격한 사망으로 인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학적 진단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하는 등 모두 7개 사항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해당 약관에 반영함.

* 병리학적 진단은 MRI, CT 등을 통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나 실무상 병리학적 진단이 곤란(보험가입자 사망시)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아울러 이번 약관 개선시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약관 표현을 정비하도록 함.

[개선 내용]

1. 보장내용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보장내용을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

- 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확정시 임상학적 진단 인정(생□손보 공통)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급격한 사망에 이르러 MRI, 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인 임상학적 진단(예: 치료기록)도 인정
- ② 새로이 악성으로 분류된 신생물(암)에 대한 보장 확대(생□손보)
 -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개정('08.1.1시행)에 따라 일부 경계성종양이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됨에 따라 동 질병에 대하여도 암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
- ③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시 회사 지정의사의 진단을 요구하는 절차 삭제(생□손보)

2. 약관 및 보험금 지급기준의 명확화

현행 약관상
모호한 질병
정의를 삭제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 ④ 갱신행 보험의 갱신행 사유 명확화 및 안내□설명 절차 강화
 - 보험회사의 자의적 판단기준에 따른 갱신행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위험보장 축소 조항을 삭제, 갱신행 30일전 안내 의무 추가
- ⑤ 책임개시 이전의 장해가 악화된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손보)
 - 보험회사 책임개시 이전의 장해가 악화된 경우 기존 장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된 장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화
- ⑥ 운전자보험에서 벌금확정 지연시 보상기준 명확화(손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벌금의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도 보상대상에 포함.
- ⑦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 확정시기 명확화(손보)
 - 현행 약관상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질병의 정의(발병시점)를 삭제하고 객관적인 질병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3. 보험용어의 정비

보험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난해한 보험
용어를 정비

- ⑧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약관표현 정비(생□손보)
 - 동일한 의미임에도 회사별로 상이한 용어 사용을 표현 정비
 - ⑨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용어의 정비(생□손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 등 약관 표현이 난해하거나 전문적인 용어 등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정비
-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자료 : 금감위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계리실, 2008.2.18.
(박정희 연구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설계사를

비롯한 4개

특수형태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됨.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희망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주요 내용]

1. 평균임금증감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영 제21조)

□ 2007.12.1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의 증감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기준으로 함.

평균임금증감률

산정기준 및

방법을 개선

○ 단, 60세(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 및 산정 방법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 일용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통상근로계수 제도는 그 적용의 일관성이 없음.

○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 개선(안 제24조)

□ 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는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보상기준

금액을 근로자

1인당 월별

평균

임금총액의

365분의 1.8

또는 0.5를

곱하여 산정

허위 진료비

청구시

지급보험급여의

1.5~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

-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의 대상을 업무상 질병 중 유해□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경과한 후에 발병하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일시적인 다량 노출로 발생하는 급성 질병은 제외되도록 규정

- 4.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기준 개선(안 제25조)

- 보상기준 금액은 전전연도 7월부터 직전연도 6월까지의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보고서상의 전산업□전규모의 근로자 1인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을 365로 나눈 금액에 1.8 또는 0.5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5.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신설(안 제26조부터 제35조)

- 업무상의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각각 규정함.

- 6. 과징금의 부과 기준 신설(안 제38조)

- 허위 증명으로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5배부터 3배까지 과징금 부과

- 허위 또는 부정의 진료비 청구시 그 진료제한의 기간을 참작하여 부당 청구한 진료비의 1.5배부터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료제한의 사유별로 과징금의 기준을 규정

- 7. 진료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 신설(안 제39조 및 제40조)

- 진료계획서는 상병명, 기초□기존질환, 상병경과□진료내용 및 상병상태, 요양기간 연장 필요성,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이며, 진료계획은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을 받아 변경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우대조치 함

8.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방법 신설(안 제45조부터 제47조)

-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하도록 함.
- 인력□시설 또는 장비, 의료서비스의 수준, 만족도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되, 평가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대조치 함.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신설(안 제126조)

- 2007.12.1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 특례 적용의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으로 명시함.
-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2008.2.25.

(박정희 연구원)

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취지

4단계
방카슈랑스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시행을 철회

- 국회 재경위 논의과정('08.2.21)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적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 “판매임직원 2인 제한 규정”(‘08.3.31 일몰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표 1> 보험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제40조제2항관련)

1. 제1단계: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 개인저축성 보험	가. 개인연금
(1) 개인연금	나. 장기저축성 보험
(2) 일반연금	다. 화재보험(주택)
(3) 교육보험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4) 생사혼합보험	마. 종합보험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바. 신용손해보험
나. 신용생명보험	

2. 제2단계: 2005년 4월 1일부터. 다만,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년 10월 1일부터로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 제1단계 허용상품	가. 제1단계 허용상품
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에 한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을 제외한다)	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에 한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을 제외한다)

- 금융기관보험대
리점의 모집
중사 임직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
- ①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철회)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대해 '08.4.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하는 규정 삭제
 - ② (판매임직원 2인 제한 규정 효력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모집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을 '08.3.31일까지로 제한하는 부칙 규정 삭제
 - 향후 계획
 - 2.2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8.4월 이전 시행할 계획

* 자료 : 재경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008.2.28.

(박정희 연구원)

8. 2007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소비자의
의식을 조사

-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금융회사 이용실태, 금융정보 인지도 및 금융소비자교육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의식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함.

<표 1> 조사 개요

- | |
|--|
| ☐ 조사대상 :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 20세 이상 국민 700명 |
| ☐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대표 : 이상경) |
| ☐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방문조사('07.11월 ~ 12월 실시) |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7% |

I. 조사 개요

금융회사
선택시
안전성을
최우선시 함

- ☐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 선택시 안전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수익률(21.6%)과 거래수수료(9.0%)에 대해 불만
- o 금융상품 선택 시 주로 금융회사 직원 및 홍보물을 통해 이용이 편리하고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약 절반 이상이 상품 및 약관내용 설명이 부족하다고 응답
- o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하여 투자부문□상품에 대한 교육수요(31.4%)가 많으며, 교육방식은 대중매체인 매스컴(35.4%), 실시기관은 금융회사(42.0%)를 선호
- ☐ 금감원 업무호감도*는 전년 31.9%에서 54.0%로 22.1%p 개선되었음.

* 공정한 금융회사 감독, 금융사고예방,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질서 확립 등

II. 조사 결과

1. 금융회사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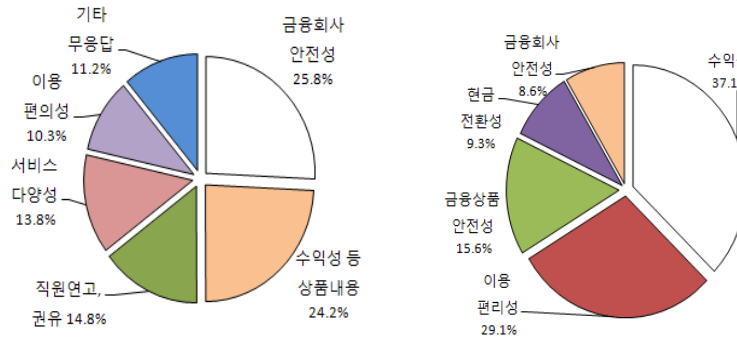
-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안전성 및 수익성 위주로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있으며, 주로 낮은 수익률에 대해 불만을 제기

- 전년 대비 금융회사 안전성에 대한 비중은 약간 증가*한 반면, 수익성 등 금융상품 내용은 약간 감소

* 금융회사 선택은 안전성을 중시, 금융상품의 선택은 수익성을 기준 판단

금융상품
선택시 수익성,
이용편리성,
상품의 안정성
등의 순으로
선택

<그림 1> 금융회사 선택 요건 및 금융상품 선택 기준



2. 금융거래 이용실태

- 소비자의 경제생활에서 금융상품투자 등 금융거래의 비중은 평균 56.4%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0.4%p 증가

2007년 소비자
금융거래의
비중은 56.4%로
전년대비 10.4%p
증가

-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국내외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 기인
- 금융상품 선택시 수익성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반면 예상손실과 약관에 관한 사전 인지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약관을 읽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3%, 약관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문의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06년 대비 각각 0.3%p, 9.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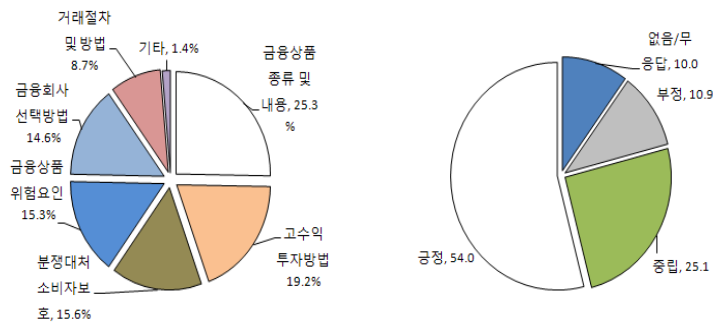
3. 금융소비자 교육

- 금융소비자의 금융교육 요구수준은 높은 상태이며, 매스컴이나 공개강좌를 통한 다양한 금융정보제공을 가장 희망

소비자의
금융교육 요구
수준은 높은
편이며, 다양한
정보제공을
원함

-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63.6%이며, 금융상품 종류□ 내용*, 고수익 투자방법, 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위험요인 순
- * 투자신탁□증권투자 관련 상품 교육 수요 증가('06년 26.8%⇒'07년 31.4%)
- 금융교육 실시기관 선호도는 금융회사 42.0%, 공공소비자 보호 기관 28.6%, 민간소비자단체 18.1%, 언론기관 15.1%이며, 공공기관의 금융교육 친화도 제고가 필요('06년 대비 4.0%p 감소)

<그림 2> 금융교육 선호내용 및 금감원 호감도



4. 금융분쟁 대처방법 및 금감원에 대한 인식

금융분쟁시
대처방법으로
주변인 자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분쟁시 대처방법으로는 금감원 이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사람의 자문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71.4%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활용 및 직접 법률조사가 큰 폭** 증가
- * 금융분쟁시 금감원 이용비중 : '06년 24.1% → '07년 28.6% (4.5%p 증가)
- **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검색 및 직접 법률조사 전년 대비 각각 11.0%p, 32.6%p 증가
- 금감원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 54.0%, 중립 25.1%, 부정 10.9%로 전년 대비 호감도가 대폭(22.1%p) 개선
- 금감원 분쟁처리에 대한 인식은 신뢰한다(매우믿음, 상당히 믿음)는 응답이 63.3%로 전년(64.8%)에 이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III.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대책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강화

□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도, 제도 개선 및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소비자는 금융상품 선택시 수익성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손실가능성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이 여전히 미흡하여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함.

○ 금융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거나 위험요인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는 경우가 거의 절반(48.9%)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설명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 금융교육의 높은 욕구에 반해 금융교육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금융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할 예정임

○ 금융교육의 교과과정 반영□확대를 추진,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금융교육 실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임.

□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정보에 대한 욕구는 상승하고 있으나 금융정보습득을 위한 금감원 홈페이지 접근성은 기대에 비해 낮은 실정임.

○ 사용자 중심의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이 진행 중이고, 금감원은 금융상품 정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상담□분쟁 사례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을 보다 강화할 예정임.

* 자료 :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 기획팀, 2008.3.17.

(박정희 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1. 국제 동향

<2008년 세계기업연금자산 연구>

- Watson Wyatt는 최근 대규모 기업연금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11개국(이하 P11이라 칭함)을 대상으로 2007년 기업연금자산의 투자패턴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특히 4개의 가장 작은 시장(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을 제외한 P7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함.

<주요 조사결과>

- 기업연금자산증가로 부정적 인구변화의 영향이 완화됨.
- 제2층의 저축수단인 기업연금제도는 기금자산이 지난 10년간 매년 7.1%씩 성장했으며, 1997년 GDP대비 64%이었던 것이 2007년 82%까지 증가함.
-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부양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인구변화에 대해 탄력을 제공함.
- 연기금자산투자유형은 점점 방어적 투자경향을 보임.
- 세계 평균 연금자산은 현재 주식 56%, 채권 28%, 그리고 16%의 기타자산(현금 약 5%, 기타 11%로 추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기금은 세계적으로 다른 자본투자상품보다 주식에 20%정도 과중하게 투자되어 있으며, 채권에는 상당히 과소 투자되어 있음.
- 최근 추세는 주식의 성장이 정체하고 있으며 채권투자와 기타 자산이 성장의 조짐을 보이면서 방어적이 되어가고 있음.

연기금은 주식
등에 과중하게
투자되고
있으나 최근
방어적인
경향을 보임

연기금은
과도한
투자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증가된
투자비용으로
초과수익달성
이 어려워질
것임

- 이러한 방어적인 변화의 요인은 ① 투자목표가 완화되는 수준까지 펀딩포지션 개선 ② 이전 주식에 유리했던 현지 규제나 회계의 변화 ③ 성숙단계의 부채: 리스크수용도(risk tolerance)는 투자시계(time horizon)가 짧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줄어듦.
-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투자 패턴에서 시장수익률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경영리스크부담이 조정되고 있음.
- 현재 주식에 대한 투자는 채권보다 연간 약 1.5%~2.0%이상의 투자목표를 가능케 하고 있음.
- 모든 기금은 적극적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률 이상의 높은 목표수익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목표수익률이 인상되었고 공통적으로 연 1%를 초과하는 것임.
- 연기금은 우수한 지배구조를 통해 그러한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증가된 투자비용으로 향후 그러한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임.

<표 1> 10년간 연금자산규모 변화 및 연기금/GDP비중

자산	1997년	2007년	비중(%)
호주	193	934	105
캐나다	517	1,030	73
프랑스	72	170	7
독일	192	364	11
홍콩	17	73	36
아일랜드	37	124	49
일본	1,901	2,973	68
네덜란드	365	993	131
스위스	294	600	145
영국	1,050	2,646	96
미국	7,893	15,026	109
전체	12,531	24,932	•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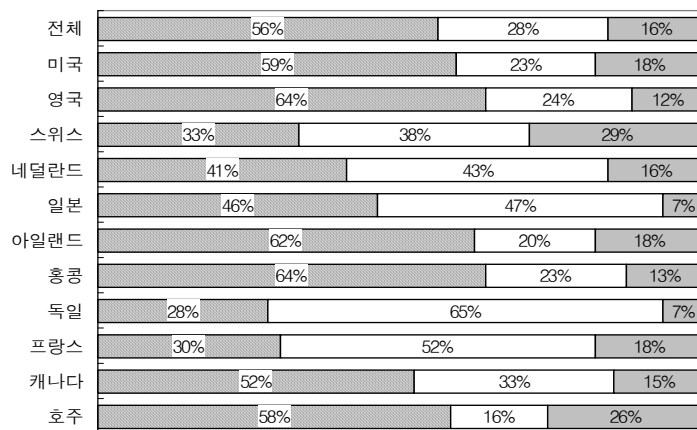
출처 : Watson Wyatt Worldwide

□ 2007년 말 연금자산 현황

- 조사된 11개국의 2007년 연금자산은 USD 24,932bn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06년과 비교해서 8.7% 증가한 것임.
- 2006년의 경우 달러로 측정된 가치로 전년도에 비해서 12%의 성장률을 보인 바 있음.
- 지난 10년간 평균성장률은 7.1%였으며, 5년간 평균성장률은 11.6%였음.
-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미국, 일본,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10년간에 걸쳐 미국과 일본의 연기금은 낮은 성장률(미국 6.7%, 일본 4.6%)로 인해 세계연금자산에서 비중이 감소해 옴.
- 2007년 평균 자산배분 상황은 주식 56.4%, 채권 27.7%, 그리고 15.9%가 기타 자산(현금, 부동산, 대체투자상품 포함)으로 나타남.
- 기타 자산 항목으로 분류된 자산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는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보여줌.

연기금은
10년간 연평균
7.1%성장했으
나 최근
5년간은
11.6%씩
성장했음

〈그림 1〉 2007년 연금자산배분 현황



■ 주식 □ 채권 ■ 기타

자료출처: AIA 2008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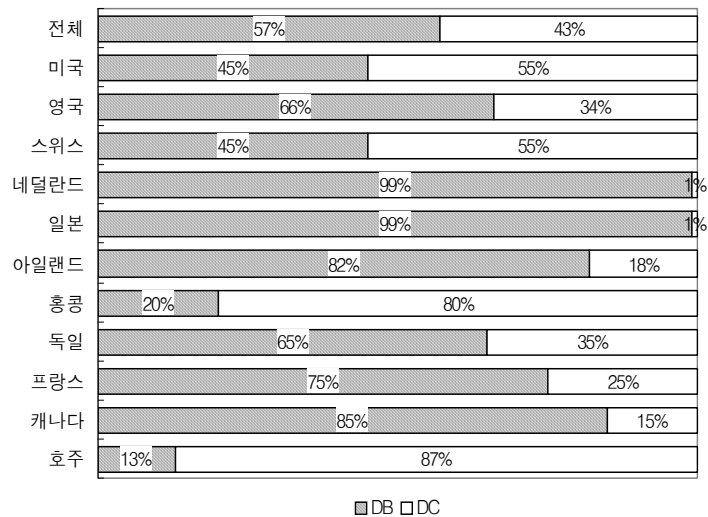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 국가는
미국, 영국과
호주임

-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 국가들은 미국, 영국과 호주인 반면 채권비중이 높고 주식과 대체자산에 비중이 낮은 가장 보수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한 국가는 일본과 네덜란드임.

□ 2007년 말 DB/DC 비중 현황

- 지난 5년간 DC 자산은 연 13%씩 성장한 반면에 DB자산은 연 11%씩 성장함.
- 현재 총연금자산 중에 44%가 DC 자산이며, 1997년은 34%, 2002년은 42%였음.
- DC 자산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미국, 호주, 그리고 스위스인 반면 일본과 네덜란드는 DC 로의 변화 조짐이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100% DB 자산임

<그림 2> 2007년 DB/DC비중 현황



지난 5년간
DC자산이 연
13%씩
성장함

자료 : Watson Wyatt Worldwide, "2008 Global Pension Assets Study", 2008. 1.

(김진억 선임연구원)

2. 미국 동향

<미국, 복합보험상품에 대한 고객견해조사>

- LIMRA International은 미국 10개 도시에서 10개의 잠재적인 복합 보험상품구매자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네 가지의 다른 복합보험상품군(장기간병보험급부특약부 종신보험, 장기간병보험특약부 연금보험, 변액연금부 변액종신보험, 그리고 장애소득급부특약부 종신보험)에 대해서 고객의 반응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함.
 - 참가자들은 40세 이상의 5만 달러이상 소득자들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대표하도록 선별됨.
-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들은 종신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혼합하는 개념의 상품을 가장 선호하며, 장애소득과 생명보험 혼합을 가장 선호하지 않음.
 - 동시에, 독립된 상품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각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증가함.
 - 복합보험상품은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보험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함.
 -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의 가격에 대해 회의적이며, 특히 생명보험과 관련된 복합보험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회의적임.
 - 구매자들이 생명보험, 장기간병보험, 퇴직소득보험, 혹은 장애소득보험과 같은 상품에 수요가 있는 경우 복합보험상품은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음.
 - 고객들은 특히 일시납상품의 경우 명성이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복합보험상품을 구매하길 원하며, 관련된 보험상품에 경험이 있는 회사를 원함.

고객들은
종신보험과
장기간병보험
이 혼합된
상품을 가장
선호함

<장기간병 복합보험상품>

: 장기간병보험특약부 종신보험과 장기간병보험특약부 연금보험

□ 유망시장

- 이들 상품에 대한 소비자반응을 기초로 했을 때 장기간병보험 혼합상품에 대한 2개의 잠재적 시장이 있음.
- 단일의 장기간병보험을 검토하였으나 구매를 결정하지 않은 부유한 노령소비자들 : 이들은 잠재적 혜택에 비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퇴직 후 의료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단일의 장기간병보험구매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나 종신보험보장에 대해 우선적인 필요가 있는 퇴직 전 중상위소득자와 대중적 부유층이 그 시장임.
- 이 상품들은 싱글들 또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음.
- 또한 부모를 위한 보험상품을 구매하려는 자녀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지고 있음.

□ 판매경로

- 노령의 부유한 고객들은 은퇴재정설계를 고려할 때 가장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재정설계사, 은행 등은 적합한 상품, 적절한 관계, 그리고 적절한 판매수단을 이용했을 때 잠재적 성공가능성이 높음.
- 이용할 수단은 많지만 장기간병을 위한 공식적인 재정계획이 없는 부유층의 경우, 적절한 생명/LTC 보험상품을 설계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중산층 시장과 대중적 부유층 시장의 경우, 전통적인 모집인이 마케팅에 보다 적절한 채널일 것임.

장기간병
복합보험상품
은 2개의
잠재적 시장이
있음

노령의
부유층에 경우
모집인이 가장
적절한
판매채널임

이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이해가 중요함

- o 탄력적인 보험료를 지불하는 종신보험에 익숙한 모집인은 미래 장기간병필요에 부합하도록 사망급부를 늘릴 수 있는 선택특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판매방법

- o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두개의 복잡한 상품의 결합이며, 비록 상품이 특정 세부시장에 적합하더라도 판매와 유통방법이 궁극적으로 성공을 결정함.
- o 고객들은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도 구매를 주저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가격 때문이지만 가장 크게는 장기의 금융계약에 대해 보다 조심스럽기 때문임.
- o 만약 잠재적인 구매자가 제시되는 상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o 이러한 소비자들은 모집인에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상품구매를 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설계사들은 처음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상품설계문제

- o 소비자들은 「종신보험과 장기간병 결합상품」 중에 생명(종신) 보험요소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사망급부를 독립적인 생명보험보다, 특히 비용이 전형적인 정기보험 보험료와 비교될 때, 덜 매력적이기 때문임.
- o 그러나 보다 노령 부유층의 경우, 생명보험보장이 장기간병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수적이었으며, 이러한 개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생명보험을 적절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장기간병에 대한 필요가 보다 절실함.
- o 「장기간병보험부 정액연금」의 수익률은 단일의 연금보험보다 낮아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음.

- 조사참가자들은 연금보험과 장기간병보험 조합상품이 장기간병 보험특성을 위해 수익률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장 기간병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만 호소력을 갖는다고 느끼고 있음.
- 주요 장점
 - 보다 노령의 부유층시장의 경우, 장기간병보험 조합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은 미래 장기간병필요에 대비해 저축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함.
 - 장기간병급부에 대한 언더라이팅 과정이 단일 상품의 경우에 요구되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울 수 있음.
- 단일
장기간병급부
보다
언더라이팅과
정이 단순할
수 있음
- 적합성(suitability)
 - 장기간병보험 조합상품의 경우 가장 주요한 적합성문제 중의 하나는, 구매자가 상품이 주로 사망급부(또는 연금조합상품의 경우 퇴직급부) 혹은 장기간병급부를 대비한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변액연금특성을 가지는 변액종신보험〉

- 유망시장
 - 은퇴전 소득자들
 - 퇴직시 보충적 소득에 대한 잠재적 필요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수요가 있는 부유층과 대중적 부유층
 - 주식시장 참여를 통해 수익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하락위험보호에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개인들
- 변액연금특성
을 갖는
변액종신보험
판매에 적합한
조직은 특화된
보험설계사임
- 판매경로
 - 이러한 상품에 가장 적합한 채널은 전통적인 유니버설생명, 변액상품, 그리고 정액보험에 특화된 보험설계사임.

이상품의
적합성은
변액생명과
변액연금의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판매방법

- 장기간병보험 조합상품처럼 이 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복잡성의 수준으로 인해 처음 단계에서 설계사, 그리고 고객을 교육시키는 데에 상당한 시간의 투자를 요구함.
- 고객들은 정확히 어떠한 급부가 보장되고 그 보장비용은 얼마 인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적합성

- 이 상품은 퇴직시장에서 팔리기 때문에 변액생명과 변액연금에 대한 적합성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함.
- 고객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데 따르는 위험과 보장되는 급부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방식과 투자수익률을 포기해야 할 것을 이해해야 함.
- 해약시 계약에 대한 충격과 함께 적용되는 해약공제가 분명히 설명되어야 함.
- 고객은 이 상품이 생명보험이지 연금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함.

〈장애 또는 중대질병급부와 결합된 생명보험〉

□ 유망시장

- 이러한 상품에 대해 가장 유망한 시장은 모기지보장시장이나 “모기지보험” 혹은 “모기지보장상품”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함.
- 소비자들은 이 상품을 가장 호소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부분 상품의 제한된 장애소득급부때문임.
- 그러나 싱글맘(single mothers)나 외벌이 가정과 같은 단일 소득자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음.

싱글맘이나
외벌이 가정과
같은 시장에
호소력이 있음

□ 판매경로

- o 이러한 유형의 복합보험상품에 적합한 채널은 전통적 모집인,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금융설계사임.

□ 판매방법

- o 설계사들은 고객들에게 이러한 상품이 기본적인 사망급부에 더해 모기지(장애소득이던 치명적 질병급부건)보호의 2차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해야함.
- o 장애급부는 고객의 전체소득을 대체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상품들은 피보험자가 장애자가 되었을 경우 기금이 월모기지부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임.
- o 설계사들은 정기보험과 장애(또는 치명적 질병)급부의 낮은 비용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함.

자료 : LIMRA International, "Consumer Views on Combination Products ", 2008. 2.

(김진억 선임연구원)

3. EU 동향

<영국 손해보험 판매채널 : Aggregators²⁾ 성장세 분석>

보험가격비교
사이트
손해보험판매
영향력 향상

- Datamonitor는 최근 영국 손해보험 시장에서 aggregators(가격비교사이트)가 주요 판매채널로 성장함에 따라 동 채널의 영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분석하여 발표함.
- 가격비교사이트는 주로 가계성 보험종목의 판매에 있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개요

특히
자동차보험
판매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 Aggregators, 2007년 자동차보험 신규판매의 1/5 이상을 담당
 - 동 채널의 시장진입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신규판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지며 동 분야의 신규판매에 있어 23%의 비중을 차지하며, 2007년 동 채널에서의 자동차보험 가격견적 건수는 3천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채널의 주요 사업자는 Confused.com과 Moneysupermarket.com으로, Confused.com사는 2007년 1,220만 건의 가격견적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Moneysupermarket.com사는 800만 건 정도로 추정되어 두 회사의 견적건수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함.
 - 따라서 보험회사는 가계성 종목 판매 전략의 일부로 aggregators를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음.

2) Aggregators는 사이버보험중개형 공동보험쇼핑몰로, 동 채널의 사업방법은 보험사업자가 아닌 보험상품과 회사들의 집합체(aggregator)인 보험쇼핑몰(보험상품 가격비교 • 판매사이트)을 말함.

종목별

가격견적비중
으로는
가정종합보험
이 두 번째로
높음

- 반면, 기타 가계성 종목 상품에서의 가격견적 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견적건수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로 추정되며 나머지 10%가 가정종합보험, 모터사이클보험, 여행보험 등의 상품 견적건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됨.
- Confused.com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추세가 잘 반영되고 있는데, 2006년의 총 견적건수 9백만건 중 840만 건이 자동차보험이었고 나머지 60만건 중 50만건이 가정종합보험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견적 후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 이행률은 4%~15%로 나타남.
- 상품에 대한 견적이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 되는데, 구매전환비율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낮게는 4%에서 높게는 15%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2) 사업모델

사업모델은
'클릭당수수료' 혹은
'판매당수수료' 체계

- 상품 가격비교에서 판매까지 제공하는 대부분의 가격비교사이트는 사업모델로 '클릭당수수료' 혹은 '판매당수수료'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 Moneysupermarket.com사가 유일하게 클릭당수수료 모델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교사이트는 판매당수수료 모델을 이용함.
- 클릭당수수료(cost per click) 모델 : 소비자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시하는 회사의 상품을 클릭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클릭당 수수료를 받음.
- 판매당수수료(cost per sale) 모델 :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견적을 받은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구매할 경우 고정 수수료를 납입받는 체계임.

- 기타 수수료로 비교사이트 상에 광고를 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나, Confused.com사나 Gocompare.com사 같은 몇몇 사의 경우 웹사이트 상에 광고를 허용하지 않음.

3) 소비자 성향 분석결과

- 인터넷 소비자는 보험갱신시 보험회사를 바꿀 가능성이 높음.

온라인고객일
수록
보험회사
전환률이
높고
가격민감도도
높음

- 데이터모니터의 설문분석 결과,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1/3 이상이 갱신시 보험회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종합보험의 경우에도 온라인 채널 소비자의 전환도가 높게 나타났음.
- 향후 보험갱신시 타상품의 견적의향 가능성 정도도 온라인 채널 소비자의 경우 가능성이 77%~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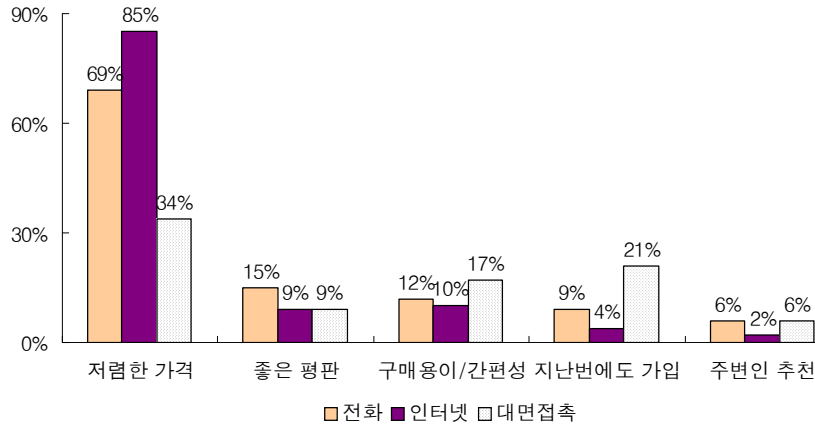
<표 1> 판매채널별 보험회사 전환률 및 타사 상품 견적 의향

구분			전화	인터넷	우편	대면접촉
자동차 보험	최근갱신시 전환률	전환	15%	37%	10%	11%
		비전환	81%	55%	87%	85%
	향후갱신시 견적의향	있음	59%	77%	52%	52%
		없음	37%	22%	43%	46%
가정종합 보험	최근갱신시 전환률	전환	13%	31%	4%	8%
		비전환	84%	65%	94%	88%
	향후갱신시 견적의향	있음	59%	78%	45%	42%
		없음	39%	18%	55%	60%

주 : Datamonitor 설문분석 자료이며, 기타 응답은 제외되었음.

- 온라인 소비자는 기타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가격민감도가 큼.
- 온라인 자동차보험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구매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성향은 가정종합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림 1>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판매채널별 보험회사 선택 기준



주 : Datamonitor 설문분석 자료이며, 중복응답이 포함되었음.

젊고 부유한
계층일 수록
인터넷 채널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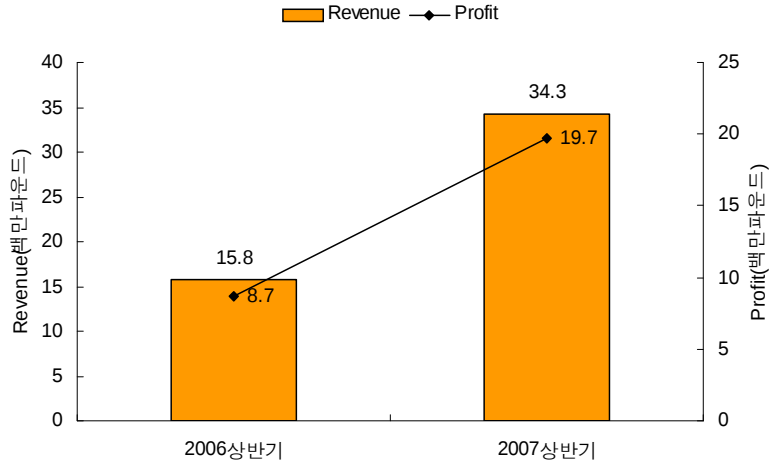
- 가격비교사이트는 주로 젊은 연령층과 부유한 계층에서 선호도가 높음.
-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는 인터넷을 자동차보험 구매 채널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24세 연령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에서는 41%가, 가정종합보험의 경우 27%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채널 점유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고소득 계층일수록 인터넷 보험 구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이 5만 파운드 이상인 고소득계층의 경우 보험구매시 인터넷 채널 활용률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33%, 가정종합보험의 경우 20%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낮아질수록 인터넷채널을 통한 구매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4) 주요 사업자별 실적 분석

Confused.com
은 2007
상반기기준
매출액 2배
확대

- Confused.com은 2007년 6월 기준으로 이익이 2배 확대되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함.
- 주로 손해보험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사는 영국의 직관 회사인 Admiral사의 자회사로, 2002년 자동차보험 부분의 비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가스로, 전기요금, 신용카드, 모기지까지 상품 서비스를 확대함.
 - 손해보험에서는 주로 자동차보험과 가정종합보험, 오토바이, 여행 보험에 대해 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소규모기업성 보험, 애완동물보험, 생명보험까지도 사업분야를 확대할 예정임.
 - 2007년 상반기 수입은 343백만 파운드, 2006년 한 해에 거둔 수입과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견적건수로는 2006년 한 해의 견적건수가 900만 건인 반면, 2007년 상반기의 견적건수는 710만 건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Confused.com의 2007 상반기 실적



자료 : Admiral 2007 중간보고서

<표 2> Confused.com사의 연도별 수입 및 건적건수

(단위 : 백만파운드, 백만건)

구분	2004	2005	2006	2007상반기
Revenue	na	12	38.5	34.3
Profit	2	8.8	23.1	19.7
총 건적건수	na	4.1	9.0	7.1

자료 : Admiral 2006 정기보고서, 2007 중간보고서

Moneysuper-
market.com도
2007 상반기
매출 성장률
74% 기록

- 한편, 금융서비스 상품 비교에 주력하고 있는 Moneysupermarket.com 또한 2007년 상반기 보험 비교서비스 부문의 수입 성장률이 74%로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동 사는 1993년 모기지관련 정보를 특화하여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9년 웹사이트상에 모기지상품 비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3년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비교서비스를 시작함.
- 현재 크게 아래와 같은 4가지 분야에 대한 비교서비스를 제공
 - 모기지□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 상품, 보험상품, 여행(항공, 숙박, 렌트카 등)상품, 기타서비스(핸드폰, 가스, 전기요금, 쇼핑 등)상품
- 보험부문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50개 이상의 보험회사 상품을, 가정종합보험과 관련해서는 60개 이상의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해 줌.
- 동 사의 2006년 한 해 수입은 105백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5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부문에서의 소득은 31백만 파운드로 전체의 30%를 차지함.

<표 3> Moneysupermarket.com의 연도별 수입

(단위 : 백만파운드)

구분	2004	2005	2006
총 revenue	59.7	68	104.5
총 operating profit	15.3	14.1	11.1
보험부문 revenue	na	na	31

자료 : Moneysupermarket.com 보도자료, 2007.6

- o 2007년 상반기에는 보험부문의 수입이 25백만 파운드로 집계됨.
- 대부분의 수입은 'cost per click(클릭당수수료)'에 따른 것이지만 동 사이트는 보험회사 광고 등 기타부문에서의 수입도 창출해 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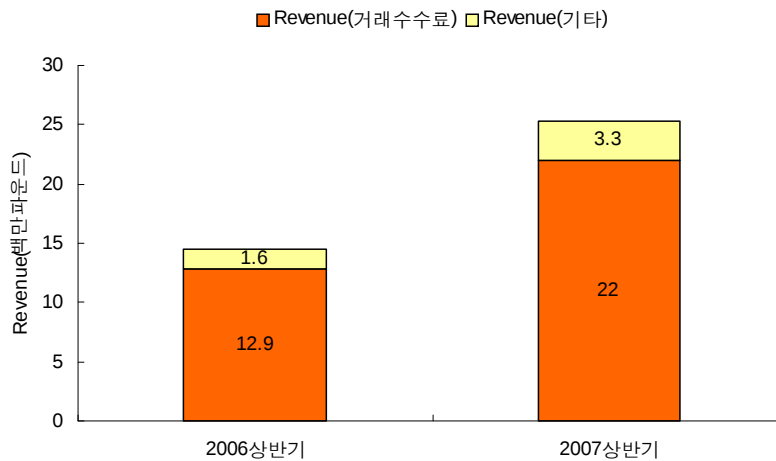
<표 4> Moneysupermarket.com의 보험부문 주요 실적

(단위 : 백만파운드)

구분	2006상반기	2007상반기	성장률
보험부문 총 revenue	14.5	25.3	74%
revenue(거래수수료)	12.9	22.0	70%
revenue(기타)	1.6	3.3	105%

자료 : Moneysupermarket.com 2007상반기 중간보고서

<그림 3> Moneysupermarket.com의 보험부문 상반기 실적



자료 : Moneysupermarket.com 2007상반기 중간보고서

신규사업자의 활발한 시장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Confused.com과 Moneysupermarket.com 외에도 아직 신시장 분야인 동 영역으로의 활발한 시장진입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o Tesco Personal Finance가 2007년 9월 설립한 TescoCompare.com 사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Tesco Personal Finance는 전국적 대형 유통업체인 Tesco와 Royal Bank of Scotland가 제휴한 형태임.
- TescoCompare사는 다중브랜드(Multi-brand)전략을 추구하는 RBS와의 제휴를 통해 RBS Insurance 브랜드인 Churchill과 Previlleg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유일하게 비교해주는 장점을 지님.
- o 손해보험 상품에 한정하여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Gocompare.com은 2006년 6월 설립되었으며, 5성등급시스템(five star rating system)에 따른 가격과 특징을 비교하여 상품별 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o 그 외에도 Onlyinsurance.com, Confidentcover.com이 2007년 보험가격비교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였음.

자료 : Datamonitor, "Aggregators in UK General Insurance 2008 : A Growing Force", 2008.3

(지재원 선임연구원)

<ABI, 생명보험 및 연금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ABI,
"Customer
Impact Survey"
실시

- ABI(영국보험자협회)는 "Customer Impact Scheme" 사업의 일환으로 32개 보험회사의 2만 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Customer Impact Survey(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Customer Impact Scheme"은 영국의 생명보험, 연금, 투자산업의 고객 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 3월부터 실시되었으며, 동 프로그램은 FSA가 도입한 "TCF이니셔티브(Treating Customers Fairly Initiative)"를 보완함과 동시에 원칙에 근거한 규제에 좀 더 밀착하기 위해 설계됨.
- 동 스킴에 따라 실시한 "Customer Impact Survey"는 보험회사들이 고객책임(Customer Commitments)과 관련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례 고객 조사임.

1) Customer Impact Survey 개요

생명보험, 연금
및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32개
회사들이
조사에 직접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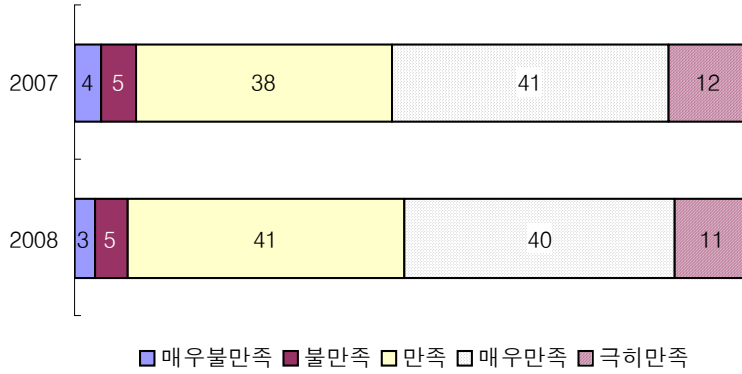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32개 회사들은 고객을 아래와 같이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자사의 고객에게서 조사한 결과를 취합하여 산업 전반적인 만족도를 도출함.
- 최근 고객(조사시점에서 3~9개월 안에 계약한 고객)
- 클레임 접수 및 보험금 지급 고객(조사시점에서 3~9개월 안에 만기가 되었거나 보험금 혹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고객)
- 일반 고객(상품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고객)

2) 전반적인 만족도

-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그림 1>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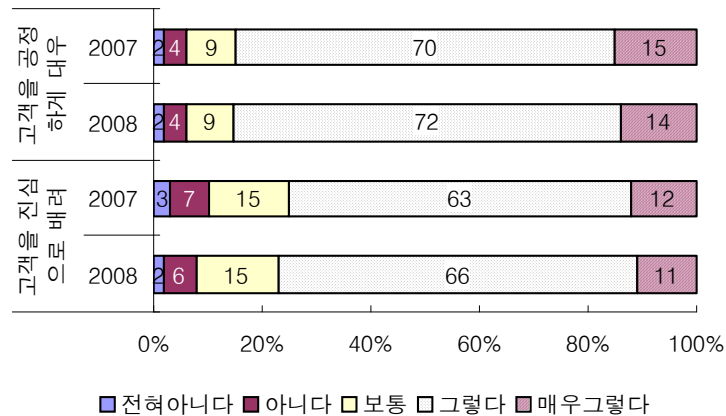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양호

- 회사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만족'과 '극히 만족'에 응답한 고객의 비율이 51%로 나타나 2006/07의 조사 결과인 53%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고객은 8%로 지난 해의 9%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1%p 감소하였음.

□ 고객중심서비스에 대한 평가

<그림 2> 고객중심 서비스에 대한 평가

(단위 : %)



- 회사가 진심으로 고객을 배려하느냐는 설문에 77%의 고객이 동의하여 지난 해의 조사결과에 비해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고객에 대한 처우가 정당한가에 대한 설문에는 8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

3) 상품 및 판매절차 측면에서의 만족도

□ 상품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상품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훌륭하다는
답변이
12%를 차지

-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하여 44%의 고객이 우수하거나 훌륭하다고 답하였으며, 지난 해의 조사결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 상품에 대한 전반적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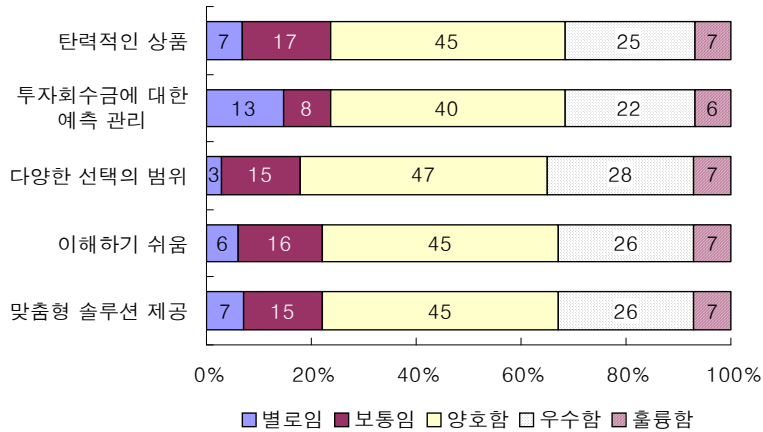
- 상품 세부특성별로 살펴볼 때, 선택의 범위 측면에서 다양하다는 평가에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이해하기 쉽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결과를 보임.

상품특성별로는 '다양한 선택범위'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 반면, 상품의 투자회수금에 대한 예측과 관리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상품의 특성별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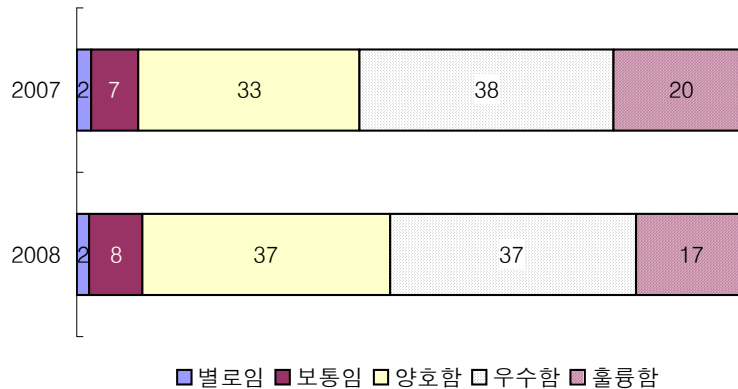
□ 판매절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판매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해보다 다소 떨어짐

- 판매절차에 대해서는 54%의 고객이 우수하거나 훌륭하다고 답하였으며, 지난 해의 조사결과에 비해 4%p나 감소하였음.

<그림 5> 판매절차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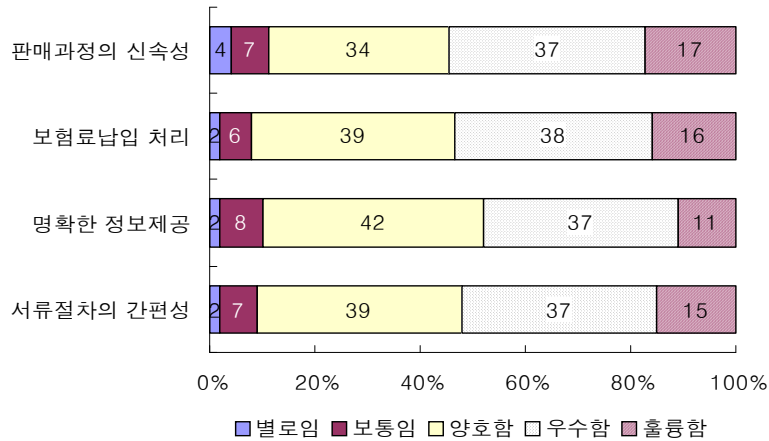
(단위 : %)



- 항목별로는 판매과정의 신속성, 보험료 납입 처리, 서류절차의 간편성 항목에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았던 반면, 명확한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판매과정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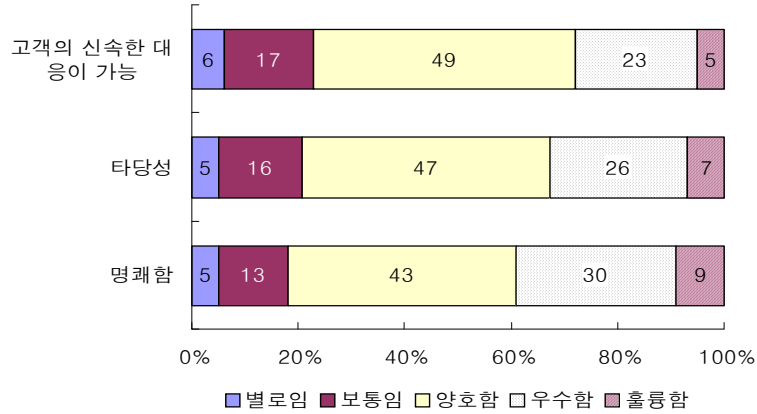
4) 고객관계유지 측면에서의 만족도

□ 문서를 통한 고객접촉

- 편지 등 문서를 통한 고객접촉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41%의 고객이 우수하거나 훌륭하다고 답하였음.
- 문서접촉의 빈도에 대해서는 79%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가 다소 많은 편, 1%가 너무 잦다라고 응답하였음.
-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항목별로는 명쾌함, 타당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동 서비스가 고객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문서를 통한 고객접촉에 대한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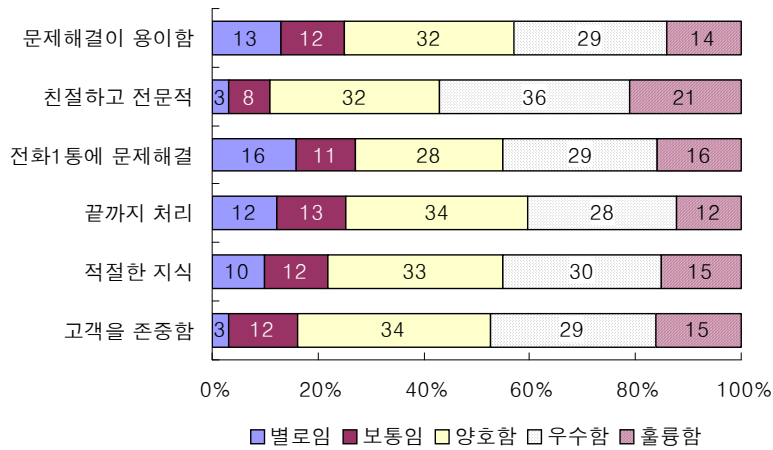
□ 고객센터센터에 대한 만족도

콜센터의 항목별 만족도는 '친절하고 전문적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음'

- 전화를 이용한 고객센터센터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가는 52%의 고객이 매우 우수하거나 훌륭하다고 답변한 반면, 22%의 고객은 보통 혹은 불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세부항목별 조사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

<그림 8> 고객센터센터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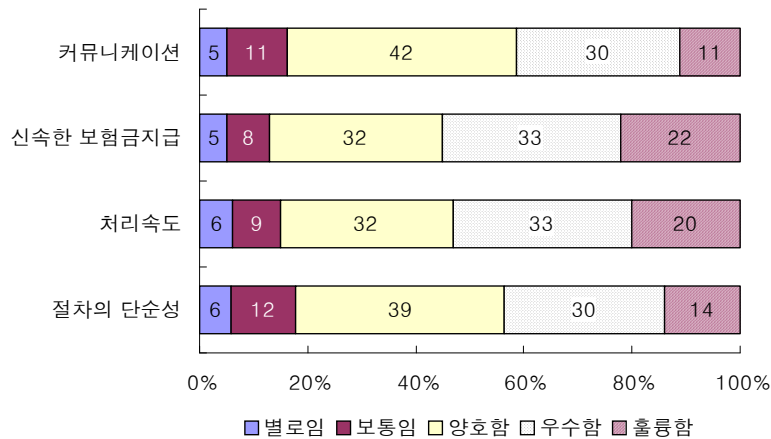
클레임 처리
부분은
'보험금 신속
지급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 보험금 청구와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

- 최근 3개월~9개월 사이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거나 지급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지급 절차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0%가 우수 혹은 훌륭하다고 응답하여 지난해의 53%보다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클레임 처리 및 보험금지급의 신속성에 있어 만족도가 높게 나온 반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절차의 단순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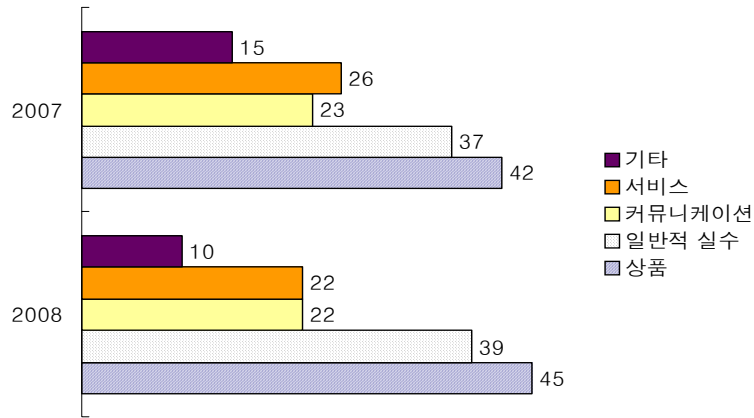


□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대한 만족도

- 최근 1년간 불만사항을 제기한 고객들 중 6백명을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 결과, 불만사항 접수는 지난 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불만사항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상품 및 일반적 실수와 관련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0> 고객 불만사항의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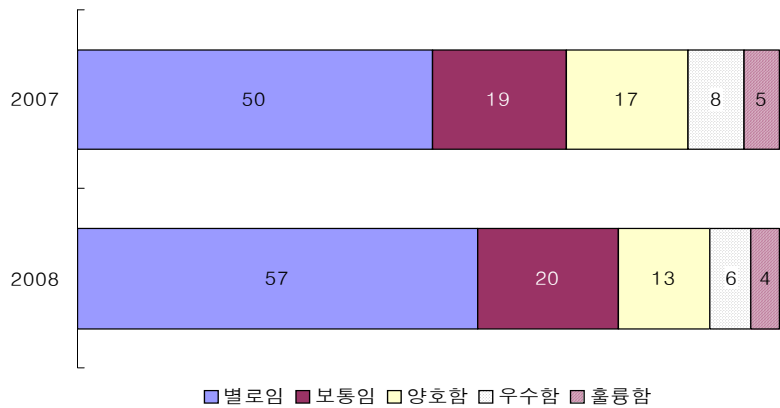
주 : 중복응답도 포함됨.

불만사항
처리는 57%가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만족도가
가장 낮음

-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불만사항을 제기한 3%의 응답고객 중 10%만이 '훌륭' 혹은 '우수'하게 처리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57%는 처리가 미숙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 보다 불만사항 처리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7% 증가하였음.

<그림 11> 불만사항 처리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자료 : ABI, "2007/08 Customer Impact Survey", 2008.2.

(지재원 선임연구원)

4. 일본 동향

〈제125회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심의회 개최〉

- 2008년 1월 18일 중앙 청사 특별회의실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함.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
험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

I. 기준요율의 적합성 심사기간 단축에 대해

1.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기준요율 개정 내용

- ① 본 요율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 2002~2007년 보험계약자의 기준요율은 보험료 등 충당교부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담하는 형태으로써, 현행 기준요율을 유지했을 경우 보험료 등 충당교부금이 종료되는 2008년 이후에는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됨.
- 2007년 보험요율 검증에서는 2008년 계약손해율이 85.2%로 나타나 예정손해율 106.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지를 조정하거나 전자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자의 누계수지(흑자액) 및 누적운용이익을 환원하는 것으로 기준요율을 인하,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2006년 12월 이후 JA(Japan Agricultural:농협협동조합)공제에 대해서도 자배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어 JA공제의 누계수지 및 누적운용이익도 환원의 대상으로 함.

보험요율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요율 인하,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경감

(1) 순보험요율의 산정

- 2008년 계약의 순보험요율 수지를 기준으로 전자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자의 누계수지 및 누적운용이익을 감안하는 것으로 개정함.

2008년 계약
순보험요율
수지 기준으로
누계수지 및
운용이익을
환원

- 최근의 손해율(2007년 요율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 2008 계약 손해율 85.2%(전차종 합계)
- 누계수지(전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자분)의 환원
: 2007년 계약까지의 전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자에 대한 누계수지 6,570억엔을 2008~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환원하며, JA공제의 누계수지는 2006년 12월 이후로 제한없이 손해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환원함.
- 누적운용이익(전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자분)의 환원
: 2007년까지 전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자의 누적운용이익 3,951억엔을 2008~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환원하며, JA공제의 누적운용이익도 지난해를 포함한 전액을 환원의 대상으로 함.

(2) 사업비의 산정

사업비 누계
수지 환원 등을
고려하여 2010년
기준을 개정

- 2008~2012의 5년간 사업비 수지의 균형을 유지시키고자 2006년 결산을 기초로 한 소요액을 추계하고, 사업비 누계수지의 환원 등을 고려하여 2010년도(2008~2012년도의 5년간의 중앙 시점) 기준을 개정함.
- 수준 시정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여 후생연금 보험요율의 인상, 고용보험요율의 인하, 계약 대수 및 지불 건수의 증감률을 산입함.
- 누계수지의 환원
: 2007년말 전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자의 누계수지 472억엔 및 손해보험요율기구의 누계수지 84억엔을 2008~2012의 5년간에 환원하며, JA공제의 누계수지도 지난해를 포함하여 전액을 환원의 대상으로 함.
- 자동차 손배책임보험 • 공제 분쟁처리 기구의 운영 경비
: 자동차 손배책임보험 • 공제 분쟁처리 기구의 운영 경비의 일부로서 계약 1 건당 4엔을 사업비에 산입함.

- 건당 소요액
산출 및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대리점
수수료를 산정
- (3) 대리점 수수료의 산정
- 2008~2012의 5년간 균형 유지를 목표로 2006년에 계약 1건당 소요액을 산출한 다음,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여 2010년(2008~2012의 5년간의 중앙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함.
- (4) 부과금을
- 순부과금율(25/10,000)과 부가부과금율($K/K+4 \times 6/1,000$)을 근거로 함.
- (5) 개정 실시일
- 기준요율의 개정 실시일은 2008년 4월 1일로 함.

<표 1>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기준요율의 개정을 계산

	항 목	
2008 계약 연도의 수지	A.2008 계약 연도 수입 순보험료	9,664억엔
	B.2008 계약 연도 지불 보험금	8,238억엔
	C.손해율(B÷A)	85.2%
	D.순보험료율 수지 조정에 의한 개정율	△14.8%
누계수지의 환원 (전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자분)	E. 2007 계약 연도까지의 누계 수지	6,570억엔
	F. 2008~2012 계약 연도 수입 순보험료	48,821억엔
	G.누계수지의 환원에 의한 개정율	△13.5%
누적운용이익의 환원(전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사업자분)	H. 2007년도까지의 누적 운용 이익	3951억엔
	I. 2008~2012 계약 연도 수입 순보험료	48821억엔
	J. 누적운용이익의 환원에 의한 개정율	△8.1%
기준요율 개정율	K.순보험료율 개정율(D+G+J)	△36.3%
	L.사업비 개정율	0.8%
	M.대리점 수수료 개정율	0.0%
	N.합계($K \times 0.669 + L \times 0.241 + M \times 0.090$)	△24.1%

주 : 합계(N)란의 계산식 중의 수치(0.669, 0.241, 0.090)는 2005년 4월 실시 기준요율에 있어서의 순보험요율, 사업비,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임.

<표 2> 계약자 부담액의 개정율 시산

	항 목	
계약자 부담액의 개정율	O. 보험료등 총당 교부금의 교부 종료에 의한 개정율	2.5%
	P. 기준료율 개정율(N:0.976)	△24.7%
	Q. 합계(O+P)	△22.2%

주 : 기준료율 개정율(P) 란의 계산식 중의 수치(0.976)는, 2005년 4월 실시
기준료율에 대한 2007년의 계약자 부담액의 비율임.

계약자

부담액의

개정율 및

차종별 손해율

<표 3> 차종별 손해율

차 종	2008년 계약 연도 손해율(%)
영업용 승용 자동차	80.7
자가용 승용 자동차	76.0
영업용 승합 자동차	99.6
자가용 승합 자동차	84.1
영업용 트럭	83.8
자가용 트럭	84.8
경자동차(검사 대상차)	86.8
경자동차(검사 대상 외제차)	92.2
소형 이륜 자동차	68.3
원동기 부착 자전거	92.9
기 타	87.2
합 계	85.2

주 : 보험 실적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11차종을 통합해 차종별 손해율을 산출하고 있음.

II.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 규정의 일부 변경

1. 변경 이유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공제
규정이 변경

□ 2008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법률이 일
부 개정되고, 공제모집에 관한 규제가 정비됨과 동시에 「공제
대리점*」으로서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본 규정이 일부 변경됨.

* 조합의 위탁을 받고 해당 조합을 위해 공제 계약의 체결대리 및 매개를
실시(동법 제12조의 2 제3항)

-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
합이 책임공제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
기 때문이기도 함.

- 이로써 본 개정과 관련된 전노제(전국 노동자공제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규정을 변경, 전노제 및 일본재공제련(일본재 공제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규정에 대해 소비생활협 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르는 규정의 정비 등을 필요로 함.

2. 변경 내용

전노제 및 일본재공제련의 변경내용

- 전노제 및 일본재공제련의 공제사업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
항을 변경 실시함.
- 공제대리점에 관한 사업규정의 추가
 - : 전노제에 대해 공제대리점을 설치, 책임공제에 관한 대리점 계
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공제사업규약에 공제대리점에 관한 규
정을 추가(전노제)
 - 상기 내용 이외의 규정 정비
 - :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전노제
및 일본재공제련 공통)
 - : 그 외, 손해보험 각사 및 JA등의 공제조합과의 정합성을 도모
하는 등의 필요한 규정의 정비(전노제 및 일본재공제련 공통)

Ⅲ.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 인가에 대해

1. SBI 손해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의 참가

SBI손해보험주 식회사의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 험 사업의 참가

- SBI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26일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손해보험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긴 하였으나, 이번 자동
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사업에 참가하고자 보험업법 제123조 제1
항의 규정에 근거해 기초 서류(사업방법서, 보통보험 약관, 보험
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의 변경 인가를 신청함.

※ 참고 ※

- ① 사업 방법서 • 보통보험 약관의 심사 기준(보험업법 제5조 제1
항 제3호)

사업 참가자
보험업법
제123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한
기초서류 및
기준

-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을 받아야 할 사람 그 외의 관계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고 함)의 보호에 피해 우려가 없는 것.
 - 보험계약의 내용에 있어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 것.
 - 보험계약의 내용이 공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조장 또는 유발할 우려가 없는 것.
 -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의무, 이 외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에 있어서 명확하고 평이하게 정해진 것.
 - 그 외
- ②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의 심사 기준(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제4호)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 방법이 보험 수리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 보험료에 있어 특정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 것.
 - 그 외
- ③ 보험요율 및 공제부금율의 기준(자동차 손해배상법 제25조)
- 책임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공제의 공제부금율은 경영효율을 최선으로 적정한 원가에 준하는 범위내의 가장 낮은 것으로 함.

IV.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와 관련되는 최근 이슈에 대해

1. 일반 병원에서의 료호(療護:치료와 간호)센터* 기능을 위탁

자동차
사고대책기구인
료호센터의
기능을 일반
병원에도 위탁

- ☐ 자동차 사고대책기구인 료호센터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체성 의식장애자의 회복을 위해 치료 및 간호기회 확충을 도모, 홋카이도・큐슈 지구를 중심으로 료호센터 기능 일부를 일반 병원에 위탁해 2007년 12월부터 개시하였음.

*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실시하는 중증 후유장애자(지체성 의식장애자) 전문 센터

(위탁처) 홋카이도 : 의료법인 나카무라 병원
큐슈 : 의료법인 성모회성마리아 병원

료호센터의

치료 및 관련
기술, 연수 비용
등 협력 병원을
확충

2. 단기 입원 협력 병원을 확충

□ 2007년 3월말 각 지역에 1개 이상의 협력 병원을 지정(총 61개 병원)하였으며, 료호센터의 치료 및 간호기술과 관련된 연수비용 등에 관한 기반을 조성

3. 간병료 지급 대상 품목을 재검토

□ 자동차 사고대책기구가 2005년에 중증 후유장애자 세대에 대해 간병비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사용률 및 자기부담액이 높아 2007년부터 ①종이거저귀(紙オムツ)②패드(尿とりパッド) ③흡인용카테이텔(痰吸引用カテ-テル)의 3품목에 대해서도 간 병료 지급대상 품목에 추가함.

간병료 지급
대상 품목을
확대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보제공 체제의 정비

자동차사고대책
기구에 NASVA
교통사고
피해자 핫라인
개설

□ 각 관계 기관・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의 정보를 집 약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창구를 마련

○ 2007년 10월 자동차사고대책 기구에 「NASVA 교통사고 피해 자 핫라인」을 개설함.

5. 고차뇌기능장애*(higher brain dysfunction) 인정 시스템 재검토

* 교통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새로운 기억을 할 수 없 는 등 장애를 초래

□ 고차뇌기능장애와 관련되는 등급 인정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 해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구 내에 검토위원회가 설치됨.

고차뇌기능장애
인정 시스템을
재검토

○ 고차뇌기능장애의 인정에 필요한 사고 직후의 의식 장애에 관 한 정보나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정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 기 위한 조사 양식의 개정 등 인정시스템을 재검토

2007년 4월 부터
정부보장사업의
운용이 변경

- 2007년 4월부터 새로운 인정시스템에 의해서 고차능력장애 인정 심사를 하고 있음.

6. 정부 보장사업의 운용 변경

- 정부 보장사업의 운용 중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까운 손해보상이 더해져야 할 것임.

자동차사고
발생방지대책의
일환으로 ASV
보조제도 도입

7. 충돌 피해 경감브레이크 보급과 관련되는 보조 제도의 창설

- 자동차사고 발생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트럭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ASV)의 조기보급을 도모하고자 보조제도를 2007년부터 창설

2008년 7월부터
피해자

8. 피해자 보호 기획관의 설치

보호기획관을
신설

-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의 연락 조정, 지방 운수국 및 자동차 사고대책기구의 지도 실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되는 기획・입안을 종합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 기획관」을 2008년 7월부터 국토교통성 자동차 교통국 보장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함.

* 자료 : http://www.fsa.go.jp/singi/singi_zidousya/siryoku/20080118.html, 2008. 1.

(박정희 연구원)

<최근 일본의 보험회사 중심의 감독 방침에 대해>

I. 개관

1. 2007년 감독 방침의 기본 방향

FSA의 보험회사
중심의
종합적인 감독
지침을 발표

- 금융청은 2005년 8월 “보험회사 중심의 종합적인 감독 지침” 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감독 및 기본 취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정리함.
- 뿐만 아니라, 2005년 4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단기 보험업과 관련해서도 2006년 3월 “소액단기보험업에 관한 감독 지침”이 제정되었음.
- 이러한 감독 지침에 근거하여 2007년 보험회사 및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감독의 중점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2007년 보험회사 중심의 감독 방침”을 제정·공표함.

2. 감독의 질적 개선

보험회사
감독에 있어
질적 향상을
위한 4대
금융정책

- 금융청에서는 최근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보험 상품의 다양화, 가격책정의 유연성 개선, 보험 상품의 판매권유 지침 정비, 보험금의 부적절한 미지급 및 누락 등에 대한 각 보험회사의 관리 태세의 개선 및 정비를 촉진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청은 각 보험회사에 약관의 용이함과 간소화, 계약시 철저한 설명 의무, 보험금 지급 관리 태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 금융 규제·감독 수준이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우선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보험회사 등의 감독에 있어서도 이러한 금융정책을 바탕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4가지 중점사항을 발표함.

**원칙 중심의
감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을 확보**

- ① 규칙에 따른 감독과 원칙 중심의 감독
: 규칙에 따른 감독과 원칙주의를 바탕으로 각각의 감독 내용을 최선의 형태로 조합하는 것이 감독 전체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봄. 즉, 법령의 적용 및 관련 지침 등을 필요에 따라 감독 지침 등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강조, 인센티브
활성화 및
자발적 노력
존중**

- ② 경영 및 관리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업무상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우선 대응함.
- ③ 보험회사의 인센티브 적용 및 자발적인 노력을 존중
: 보험회사의 경영 개선 등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을 존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활성화와 자주적인 노력을 배려하는 감독상의 대응이 필요함.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및 미래
예측성 주력**

- ④ 보험회사 운영에 있어 관리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향상
: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지침·방침 등의 공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보험회사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주력해야 함.

II. 중점 분야

- 최근 보험회사는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고도화 되고 있으며, 보험 모집 형태의 다변화, 복합회사(conglomerate)의 진전, 솔벤시 평가 및 보험 부채 평가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2007년 다양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요구**

- 2007년 이 같은 금융환경 변화로 보험회사의 업무 개선을 위한 조직의 일체적인 노력을 촉진, 보험회사 등의 업무 규모·형태에 대한 감독 대응,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를 촉진, 보험시장의 참가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확보 등을 중점 분야로 파악
- 또한 감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행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행에 임하도록 함.

보험회사의
업무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적인
업무개선이
요구

- ① 보험회사의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일체감 있는 조직으로 변화
 - 보험회사가 업무의 적절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보험회사가 상황에 맞는 경영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조직이 일체가 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는 업무개선을 위한 각 사의 자주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문제의 발견, 원인 분석, 개선책의 책정 등 적절하고 자율적인 업무개선 프로세스가 구축되는가를 검증, 필요시 여기에 맞는 업무개선 명령 등을 조치
 - 이러한 조치에 대해 충분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에 근거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개선을 위한 각 사의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인식함.

A. 적절한 보험금 지급 관리의 시스템을 수립

보험금 미지급
및 누락 등의
보험회사
자체의
업무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검증

- 보험금 등을 적절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신탁을 받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나, 2005년 이후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미지급, 지급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감독청은 이런 미지급 및 누락 등이 인정되는 보험회사에 업무개선 명령을 통보, 보험금 지급 관리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업무개선을 진행시킴.
 - 이런 업무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감독 당국은 자체적인 노력을 중시하면서 각 사에 적절한 업무개선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을 검증함.

B. 적절한 보험모집시스템을 구축

- 보험모집은 보험계약의 창구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므로 적절한 보험모집시스템 구축이 불가결함.

**보험모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준수사항 요구**

- 보험 상품의 판매·권유 규칙의 준수 사항
: 계약 개요, 의향 확인서면 등을 중심으로 한 보험회사로부터 보고, 검사당국의 검사결과를 활용, 금융서비스이용자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준수사항에 대해 검증
- 화재보험료 과징수에 대한 대응
: 화재보험요율 적용 오류 및 과징수에 대해 화재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 및 협회(GIAJ :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FNLIA : Foreign Non-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등은 2006년 12월 20일 적정 보험료 검증 요구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진척 상황 및 조사 후 각사의 보험요율 적용 등을 적절하게 대처함.
- 은행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창구판매에 대한 대응
: 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에 대해서는 폐해 방지 조치를 실시간 검증함과 동시에 계약자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의 적절한 설명 등 보험 모집에 관한 규칙을 은행 등이 준수하도록 검증

C. 상담·불평 처리시스템에 관한 강화

- 보험회사가 자발적인 업무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약자와의 상담이나 고민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원인과 내용의 분석도 동반되어야 함.
- 상담·불평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한 다음, 계약자에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지를 검증
- 불평이나 상담에 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부서의 모니터링이나 감사 부분의 검증에 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검증
- 불평 및 상담내용에 대해 발생 원인을 분석·파악하고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업무개선 방향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D. 계약자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정비

**상담이나
불만에 관한
처리시스템을
강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정비**

- 개인정보는 보험계약 거래의 기본 정보로서 보험회사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책무이므로 개인정보 관리에 적절한 시스템을 정비

② 보험회사의 사업 규모 및 형태에 따른 감독 방안

**보험회사 사업
규모 및 형태에
따른 감독
방안이 요구**

- 보험회사는 복합회사(conglomerate)와 같은 대규모에서 소액단기보험업자와 같은 소규모까지 다양한 형태의 규모로 존재
 - 또, 보험 모집에 있어서도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TV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유함.
- 감독당국은 이런 보험회사들의 실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의 상호대화를 통해 업무 규모나 형태 차이 등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감독이 필요함.

A. 특정 보험업자에게의 대응

**특정보험사업자
와의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정 보험업자와의 실태 파악
 - 업무보고서 내용에서 부터 업무 운영에 관한 조치, 모집 행위에 관한 금지 행위, 개인정보 관리 및 업무 위탁 등, 보험업법 등에서 요구되고 있는 법령 준수의 내용, 재무 상황 및 보험계약 내용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
- 소액단기보험업자와의 원활한 이행 관계
 - 소액단기보험업자의 등록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31일까지 이행 기한을 두어 각각의 특정 보험업자가 소액단기보험업자와 원활한 이행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

**2008년
3월말까지
무면허 영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 특정 보험업자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대응
 - 특정 보험업자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이거나, 그러하다고 추측되는 업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실시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나아가 필요에 따라 관계 수사 당국 등과도 제휴

- 2008년 3월말까지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보험업법상의 무면허 영업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임.

**소액단기보험업
의 경우 상품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감독**

B. 소액단기보험업자에게의 대응

- 소액단기보험업자의 경우 취급 보험상품이나 회사 규모 등이 다양한 것을 유의해 감독상의 평가 항목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업자 각각의 실정에 맞는 대응을 실시

C. 보험지주회사 및 복합회사(conglomerate)에게의 대응

- 복합회사(conglomerate) 형태의 보험회사는 그룹 구조 및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독점판매 행위를 유인하거나 그룹내 리스크를 전가, 편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금융복합회사의 감독지침도 감안해 감독국 내에 제휴를 도모하여 보험회사 및 그룹 전체의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해야함.

**복합회사의
경우
그룹차원의
감독이 요구**

D. 보험 모집 형태의 특색에 대한 대응

- TV나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다소 오해를 유발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모집 형태의 특징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

③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를 촉진

**다양하고
복잡해진
리스크 관리는
경영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

-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파악해야 하며, 계약자 등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경영진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유지, 재무 정보를 계약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해야 함.
- 또한, 재무 감독 기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감독자 국제기구(IAIS)와의 제휴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 보험계리사회 및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구 등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함.

A. 자산·부채 및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

- 2006년 10월 IAIS “자산·부채관리에 관한 기준”을 발표, 2007년 4월 솔벤시마진 비율의 산출 기준 등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각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 및 리스크 관리 현황과 향후 방향성을 검증하였음.
- 경제가치 기준으로 솔벤시를 평가, 즉, 순자산 자체의 변동을 리스크량으로 인식하여 그 변동을 적절히 관리하는 솔벤시 평가를 진행, 보험회사에 리스크 측정관리를 고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법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임.

재무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공시하고
있는지 검증

- 각 손해보험 회사의 거대재해리스크, 즉 지진재해리스크 및 풍수재해리스크의 내부 관리상의 평가법에 대해 검증
- 운용 대상 자산의 다양화 및 복잡화를 근거로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에 관한 검토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

B. 재무 정보 공시의 충실

- 보험금 지급능력의 적정성을 공시, 솔벤시 마진 비율의 의미, 지급여력 총액과 그 내역, 솔벤시 마진 비율상의 리스크 의미, 총액 및 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
- 리스크 관리 체제를 통해 솔벤시 마진 비율 규제상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보다 발전적인 내부 리스크 관리 및 자산 부채관리를 실시, 각 보험회사의 특징에 맞도록 알기 쉽게 공시하고 있음을 검증
- 제3분야 책임준비금의 부채 적정성 등의 테스트 결과를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

적정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적정성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

C. 적정한 책임준비금 적립 수준의 확보

각 사의 보험료

산출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를

모니터링

- 경영상 적절한 책임준비금의 적립 수준과 관련하여 보험 부채 평가를 감안, 보험계리인이 책임준비금 적립 수준의 관리에 충분하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검토

- 제3분야 책임준비금의 부채 적정성 등의 테스트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검토

- 생명보험 표준 생명표의 표준 사망률의 수준 및 그 타당성 분석 및 검토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검토

D. 참고순율 및 부가보험료 검증

보험시장의

참여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유관단체의

적절한 지원이

유지

-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구에 참고순율이나 지진보험의 기준요율의 순율 부분의 검증작업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검토

- 각 보험회사의 부가보험료 산출의 합리성이나 공평성 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

- ④ 보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확보

- 보험업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 및 보험 모집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청과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소비자 및 기타 유관단체 등이 관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충분한 교류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감독 당국은 보험회사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보험시장에 참여하는 주주와의 의사소통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유관단체의 자발적인 규정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임.

* 자료 : FSA, Annual Supervisory Policies for Insurance Companies for Program Year 2007, 2008. 3.

(박정희 연구원)

5. 기타 동향

<인도네시아의 보험산업>

(1) 인도네시아 보험시장 개관

인도네시아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6%
성장한 57억
7천 달러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의 2006년 GDP는 3,338조 2천억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전체수입보험료는 2005년 45조 4천억 루피아에 비해 16% 성장한 52조 4천억 루피아(약 57억 7천 달러)를 기록함.
- 2006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보험분야는 생명보험(23%)이었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군인·경찰 공제(companies administering insurance, 22%), 공영보험 및 근로자 사회보장 프로그램(Social Program & Workers' Social Security Program, 11%)이 뒤따랐고 손해보험은 3%의 성장을 나타냄.
- 2006년 각 부문별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52.5%, 손해보험과 재보험 31.7%, 공무원, 군인·경찰 공제 10.8%, 공영보험 및 근로자 사회보장 프로그램 5% 등임.

<표1>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10억 루피아)

연도	손해보험, 재보험	생명보험	공영보험 및 근로자사회보장 프로그램	공무원, 군인·경찰 공제	계
2002	13,857.6	11,436.4	1,796.7	3,090.6	30,181.2
2003	14,482.9	13,911.2	1,877.2	3,866.5	34,138.5
2004	16,695.0	18,562.7	2,083.9	4,061.7	41,403.3
2005	16,079.8	22,294.0	2,379.8	4,606.0	45,359.6
2006	16,628.2	27,498.3	2,653.3	5,642.1	52,421.9

인도네시아는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150개 이상의 활화산을 가지고 있어 지진, 화산분출 등의 자연재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생명보험사
들은 낮은
보험인지도
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의 역할도 요구하고 있으며, 일례로 정부와 보험사는 최근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킨 자카르타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
- 재보험사들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보험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꾸준히 성장 중인 4개의 재보험사들은 활동지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연재해가 손해보험산업의 주요 관심사인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낮은 시장침투도와 보험인지도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 생명보험사들은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몇몇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인슈어런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는 많은 무슬림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슬람 보험상품인 Takaful을 제공하고 있으며 Takaful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산업 현안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산업은
과열경쟁
상황임

-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산업은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과열경쟁, 시장참여자들의 근시안적 태도 등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산업은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점으로 과열경쟁을 꼽고 있으며 많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시장규제를 원하고 있음.

- 과열경쟁 문제는 비단 인도네시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수준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자동차보험시장은 중개수수료를 65%나 인상하고 보험료를 3년간 고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등 경쟁이 가열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중개사의
증가는

과열경쟁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임

- 손해보험 상품의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중개사 숫자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음.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는 이전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으며 보험산업 또한 마찬가지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보험중개사의 수는 두 배나 증가하며 과열경쟁을 부추겼음.
- 보험중개사는 보험사, 재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보험사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자동차보험
규정을
발표하였으
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07년 6월 리스크, 사고 경력, 인수비용, 공정이윤 등의 명시적 요소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규정을 발표함.
- 동 규정은 지불가능한 수수료 수준과 기술적 요구 지불준비금 등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은 자유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소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음.
- 그러나 많은 보험사들이 새로운 자동차보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산업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정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들의 사업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규정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함.

자동차보험
시장에 너무
많은
보험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보험사들이 규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자동차보험산업에 너무 많은 보험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음.
- AIU Indonesia의 대표이사인 Michael Blakeway는 시장에 너무 많은 참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 많은 경우에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경쟁우위를 가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이 규제초기에 보험사들을 다룰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함.
- 수수료 상한 규제도 환영할 만하지만 보험사들이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독당국의 책임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힘.

반대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견해도
존재함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손해보험산업에 너무 많은 규제가 존재하며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규제강도가 낮을수록 시장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도 있음.
- 이는 당국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력 있는 보험사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퇴출되게 마련이므로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임.
- 일례로 최소 요구책임준비금이 보험사의 경우 1,000억 루피아, 재보험사의 경우 2,000억 루피아로 인상되었으나 기대했던 시장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업 중인 94개 보험사 중 80%는 최소 요구책임준비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과열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침투도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 수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과열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해야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할 것임.

인도네시아
재보험사들은
빈발하는
홍수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보험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마이크로 인슈어런스를 통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 재보험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보험시장의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홍수를 겪으면서 재보험사들은 자카르타에서의 홍수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리스크로 볼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따라서 4개의 재보험사들은 홍수와 같은 리스크 보장에 있어 단서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짐.
- 2007년 2월에 발생한 홍수 피해규모는 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범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중산층들이 이주한 지역에게까지 홍수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임.
- 한 재보험사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재보험사들은 보험인수 여부를 보다 까다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재보험사들의 이러한 어려움도 근본적으로는 과열경쟁으로 인해 홍수에 대한 보장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기 때문이며 정부당국의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
- 일각에서는 홍수문제에 대한 해법이 정부당국의 홍수통제 능력 향상에 있으나 보험사들이 그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며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가 당장 이주하기 곤란한 경우 상하기 쉬운 상품이나 귀중품 등은 건물의 위층에 보관하도록 독려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지대나 건조지대로 이주할 것을 권고하는 것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시
장 전망은
밝음

- 정부당국과 보험사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홍수가 보험의 대
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앞에서 살펴보았던 몇 가지 문제점들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시장
을 기회보다는 도전이 많은 시장으로 보이게 하지만 많은 보험사
들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시장침투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takaful
이나 마이크로 인슈어런스와 관련된 많은 신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음.
- Blakeway는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길이가 5,000km에 달하며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판매조직
에게는 악몽과 같을 수도 있으나 그것에서도 역시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PT Asuransi Wuwungan의 CEO인 Wuwungan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으로서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손해보험 산업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힘.
- 또한 2015년까지 ASEAN은 적어도 5억 명의 인구를 가지는 거
대 경제연합이 될 것이며 중국, 인도보다는 작지만 방대한 시장
을 형성할 것이므로 전망은 매우 밝다고 주장함.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산
업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4)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산업 현안

- 인도네시아는 2억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면서도 생명보험 침투
도가 3%에 불과하여 생명보험 산업에 있어 많은 기회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됨.

보험인지도
를 높이는
것은
생명보험산
업의 주요
과제임

- 인도네시아의 생명보험사들은 인도네시아가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상품의 공급문제와 낮은 보험 인지도를 현재 당면한 주요 과제로 지적함.
- 아래에서는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산업 관련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 보험을 대중에게 교육하는 것은 현재 인도네시아 보험산업이 집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임.
-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Indonesian Life Insurance Association)는 2007년 생명보험 홍보 프로그램(LIAP)을 런칭하며 인도네시아 보험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프로그램은 2011년까지 진행되며 생명보험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국가적 흐름을 반영함.
- LIAP이외에도 Insurance Goes To Campus(IGTC)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젊은 지식인들에게 보험교육을 제공하고 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보험인으로서의 소양을 심어줌.
- 이 프로그램의 관계자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의 인식제고와 함께 보험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보험침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인도네시아
경제환경은
보험침투도
를 올리기에
충분치 않음

- 생명보험산업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환경이 보험침투도를 증가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잠재력은 충분하며 산업의 성장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음.
- PT Prudential life의 Kevin Holmgren은 1인당 명목 GDP가 4,500~5,000달러에 이를 때 보험침투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며 인도네시아의 2007년 1인당 GDP는 아직 1,663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힘.

o PT Asuransi Jiwa Manulife의 CEO인 David Beynon은 인도네시아의 2억 3천만 인구 중 단지 1억 명만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등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PT Asuransi Allianz Life의 CEO인 Jens Reisch는 비록 보험침투도가 3%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보험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o 그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죽음과 질병에 대한 이슈들이 명확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재무계획이나 퇴직 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설명함.

o PT Asuransi AIA Indonesia 의 CEO Harry Hermain Diah는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많은 기회가 존재하며 잠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너무 많은 보험사가 경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주요

판매채널인

설계사 수도

모자라는

형편임

□ 인도네시아에서 설계사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지만 거대한 인구에 비해 설계사수가 모자라는 것은 문제로 부각됨.

o 2007년 2/4분기 인도네시아에는 약 17만 명의 설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2,600만 명의 인구에 약 8만 명이 활동하는 말레이시아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한 것임.

o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설계사 분야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5년 후 설계사 수는 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시장은 2006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23%)을 기록한 분야로 보험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임.

생명보험산업
은 각광받는
분야이며
각 사들은
차별화전략으
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Allianz Life 의 경우 2006년 5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
는 다 채널(multi-distribution)전략이 주요인이었음.
- 따라서 Allianz는 현재 7천 명인 설계사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
에 판매채널을 더욱 다양화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형 은행과의 방카
슈랑스 합작도 중요한 성공 요인임.
- Prudential의 성공요인은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상품을 혁신적이
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현재 방카슈랑스를 통한 시장 확
대에 주력하고 있음.
- Manulife 또한 상품 다양화와 방카슈랑스를 통해 시장을 공략
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입보험료는
2006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하였음.
- Manulife는 또한 방카슈랑스 못지않게 설계사 채널에도 집중하
여 설계사와 비설계사 채널이 각각 50%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할 계획임.
- AIA Indonesia의 경우 잘 교육된 설계사들이 성공의 열쇠였다
고 설명하며 AIA의 설계사 교육 시스템은 최고라고 자부함.

규제는
적절하나
이행여부를
적절히 감독할
필요가 있음

- 규제에 관해서는 현재 이행되고 있는 규제가 적절하며 보험사들
도 이에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llianz의 Reisch는 인도네시아의 법과 규제는 현대적인 것이며
완전하다고 생각되지만 규제를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함.
- Manulife의 CEO 또한 규제의 이행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너무
방대한 나라라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며 모든 규제가 이행될
수만 있다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보험사들은 규제 이행여부를 감독할 금융당국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시장 전망도
밝음**

- Allianz는 인도네시아의 마이크로 인슈어런스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외국보험사였으며 마이크로 인슈어런스시장의 전망도 밝게 보고 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판매채널이 부족한 것은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함.
-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에서는 은행과 같은 배급망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개사나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컨설턴트를 이용해야 함.
- Allianz는 현재 3만 명에게 마이크로 인슈어런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10만, 2010년에는 50만 명으로 고객을 늘릴 계획임.

**전체적으로
생명보험
시장전망은
밝은 편임**

- 종합해보면 각 생명보험사들은 그들 나름의 경쟁우위를 가지고 생명보험시장 전망을 밝게 보고 있음.
- 각 보험사들은 생명보험협회와 협력하여 보험교육에도 힘쓰는 등 생명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자료 : Indonesia - Overview, Asia Insurance Review, 2008.2.
Moulding Indonesia's Insurance Industry, Asia Insurance Review, 2008.2.
Taming the Perils in Indonesia, Asia Insurance Review, 2008.2.

(김세중 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6			CY2007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5.1	4.8	4.0	4.0	5.0	5.2	5.5
경상수지	1,706	808	2,703	1,146	2,102	3,701	-994
수 출	81,473	82,713	87,394	84,704	92,984	90,529	103,172
수 입	76,720	80,216	79,905	82,262	87,962	86,059	100,563
실업률	3.4	3.3	3.2	3.6	3.2	3.1	3.0
금리	국고채(3년)	4.89	4.69	4.82	4.79	5.24	5.39
	회사채(3년)	5.17	5.02	5.18	5.20	5.64	5.85
소비자물가지수	102.1	102.9	102.6	103.5	104.6	105.3	106.0
환율	원/달러	960.3	945.2	929.6	940.3	926.8	938.2
	원/엔화	834.0	802.2	781.8	797.0	752.4	796.7
KOSPI	1,295.2	1,371.4	1,434.5	1,452.6	1,743.6	1,946.5	1,897.1
외환보유고	224,357	228,224	238,956	243,915	250,702	257,294	262,224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6		CY2007			
	3/4	4/4	1/4	2/4	3/4	4/4
보 험	89,600	115,113	94,663	106,338	93,397	108,974
생명보험	69,914	94,257	74,700	83,189	70,215	84,269
손해보험	19,686	20,856	19,963	23,149	23,182	24,705
은 행	128,483	181,165	33,002	101,574	8,442	204,778
일반계정	82,785	165,339	-2,513	114,075	-42,781	187,062
신탁계정	45,698	15,826	35,515	-12,501	51,223	17,716
증 권	48,065	13,445	29,858	85,722	37,556	-13,605
투 신	25,649	97,260	73,030	16,893	112,258	269,007
중 금	53,010	10,350	60,303	79,432	37,691	14,457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30,188	31,314	32,398	36,266	130,166	34,612	34,008	35,507
	성장률	5.6	6.4	7.5	14.3	8.6	14.7	8.6	9.6
	구성비	19.2	20.1	18.0	21.3	19.6	19.9	19.3	16.5
사망	보험료	69,685	70,840	72,127	72,985	285,637	73,721	73,777	75,176
	성장률	4.9	5.3	5.8	5.3	5.3	5.8	4.1	4.2
	구성비	44.3	45.5	40.0	42.5	43.0	42.3	41.8	34.9
생사 혼합	보험료	16,689	16,636	16,974	17,619	67,918	16,830	16,266	16,754
	성장률	-8.9	-11.0	-6.1	0.6	-6.4	0.8	-2.2	-1.3
	구성비	10.6	10.7	9.4	10.3	10.2	9.7	9.2	7.8
변액 보험	보험료	27,479	27,675	29,406	30,717	115,278	37,097	43,514	48,117
	성장률	127.2	70.7	18.8	-0.1	37.5	35.0	57.2	63.6
	구성비	17.5	17.8	16.3	17.9	17.3	21.3	24.7	22.3
개인계	보험료	144,041	146,465	150,906	157,587	598,999	162,260	167,565	175,555
	성장률	14.9	11.3	6.9	5.5	9.4	12.6	14.4	16.3
	구성비	91.7	94.1	83.7	91.9	90.1	93.2	95.0	81.4
단체	보험료	13,095	9,186	29,309	13,960	65,550	11,924	8,848	40,120
	성장률	13.6	-7.1	-15.0	23.6	-2.5	-8.9	-3.7	36.9
	구성비	8.3	5.9	16.3	8.1	9.9	6.8	5.0	18.6
합계	보험료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성장률	14.8	10.0	2.6	6.8	8.1	10.8	13.3	19.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18,366	20,876	20,244	22,133	81,619	20,781	25,507	29,931
	증가율	2.7	12.6	-4.0	-0.9	2.2	13.1	22.2	47.8
	지급률	60.8	66.7	62.5	61.0	62.7	60.0	75.0	84.3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25,910	29,005	27,675	29,430	112,019	27,583	29,735	32,928
	증가율	14.1	19.1	11.6	7.7	13.0	6.5	2.5	19.0
	지급률	37.2	40.9	38.4	40.3	39.2	37.4	40.3	43.8
생존보험 사합	지급보험금	18,080	18,284	18,737	18,379	73,480	18,237	22,531	35,605
	증가율	-26.1	-29.2	-47.9	-21.2	-33.0	0.9	23.2	90.0
	지급률	108.3	109.9	110.4	104.3	108.2	108.4	138.5	212.5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3,317	4,077	6,149	8,074	21,616	11,149	15,209	18,683
	증가율	454.7	381.5	307.5	227.8	299.1	236.2	273.1	203.9
	지급률	12.1	14.7	20.9	26.3	18.8	30.1	35.0	38.8
개인보험 계	지급보험금	65,672	72,242	72,805	78,016	288,734	77,750	92,981	117,147
	증가율	0.1	3.9	-12.7	3.4	-1.8	18.4	28.7	60.9
	지급률	45.6	49.3	48.2	49.5	48.2	47.9	55.5	66.7
단체보험 계	지급보험금	17,208	13,496	13,154	18,831	62,425	13,246	13,217	14,259
	증가율	17.6	12.9	-20.1	0.5	1.0	-23.1	-2.1	8.4
	지급률	133.5	170.7	44.9	134.9	95.2	111.1	149.4	35.5
전체	지급보험금	82,898	85,737	85,958	96,847	351,159	90,995	106,198	131,406
	증가율	3.2	5.2	-13.9	2.8	-1.3	9.8	23.9	52.9
	지급률	52.7	55.1	47.7	56.5	52.8	52.2	60.2	60.9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사업비	5,562	6,029	6,448	6,917	24,956	7,062	7,736	8,215
	증가율	47.3	39.2	28.7	25.2	33.9	27.0	28.3	27.4
	사업비율	18.4	19.3	19.9	19.1	19.2	20.4	22.7	23.1
사망보험	사업비	15,872	17,138	17,855	18,947	69,813	17,655	18,279	20,519
	증가율	-1.3	8.5	5.6	15.3	7.0	11.2	6.7	14.9
	사업비율	22.8	24.2	24.8	26.0	24.4	23.9	24.8	27.3
생존사합보험	사업비	5,770	5,398	5,538	5,951	22,656	5,454	6,558	7,401
	증가율	6.0	-1.8	-5.0	-2.8	-1.0	-5.5	21.5	33.6
	사업비율	34.6	32.4	32.6	33.8	33.4	32.4	40.3	44.2
개인보험계	사업비	27,203	28,565	29,842	31,815	117,425	30,172	32,574	36,135
	증가율	7.5	11.5	7.5	13.3	10.0	10.9	14.0	21.1
	사업비율	18.9	19.5	19.8	20.2	19.6	18.6	19.4	20.6
단체보험계	사업비	765	788	836	1,042	3,499	760	784	979
	증가율	11.5	7.5	-10.6	23.3	9.3	-0.6	-0.6	17.0
	사업비율	5.9	8.6	2.9	7.5	5.3	6.4	8.9	2.4
전체	사업비	27,968	29,354	30,678	32,856	120,924	30,932	33,358	37,114
	증가율	7.6	11.4	6.9	13.6	10.0	10.6	13.6	21.0
	사업비율	17.8	18.9	17.0	19.2	18.2	17.8	18.9	17.2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16	902	758	3,132	743	679	878
	성장률	-4.7	-1.2	-3.5	-3.4	-1.8	-5.2	-2.6
	구성비	1.0	1.2	1.0	1.1	0.9	0.8	1.0
해 상	보험료	1,604	1,304	1,314	6,323	1735	1,783	1,486
	성장률	13.6	1.9	10.9	19.9	-17.4	11.2	13.9
	구성비	2.2	1.7	1.7	2.1	2.2	2.2	1.6
자동차	보험료	24,344	24,444	25106	96,492	25,838	26,913	27,900
	성장률	10.3	9.4	13.6	9.8	14.3	10.6	14.1
	구성비	33.7	31.4	32.9	32.6	32.6	33.0	30.3
보 증	보험료	2,665	3,073	2718	11,428	2,424	2,341	2,602
	성장률	11.5	10.1	3.4	13.5	-18.4	-12.2	-15.3
	구성비	3.7	3.9	3.6	3.9	3.1	2.9	2.8
특 중	보험료	6,159	6,813	5872	24,987	6,584	6,728	7,455
	성장률	7.2	8.8	14.0	9.1	7.2	9.2	9.4
	구성비	8.5	8.7	7.7	8.4	8.3	8.2	8.1
해외 원보험	보험료	205	278	184	823	191	254	298
	성장률	43.1	69.9	6.4	35.2	22.4	23.9	7.1
	구성비	0.3	0.4	0.2	0.3	0.2	0.3	0.3
장 기	보험료	33,352	34,814	37072	136,802	38,628	39,850	41,650
	성장률	21.6	21.2	23.9	21.5	22.4	19.5	19.6
	구성비	46.1	44.7	48.6	46.2	48.7	48.8	45.2
개 인 연 금	보험료	1,884	2,119	2136	7,975	2,265	2,388	2,629
	성장률	9.8	18.5	19.4	14.3	23.4	26.8	24.0
	구성비	2.6	2.7	2.8	2.7	2.9	2.9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1,370	4,216	1149	7,868	892	724	7,303
	성장률	234.5	-18.3	52.8	2.1	-21.2	-47.2	73.2
	구성비	1.9	5.4	1.5	2.7	1.1	0.9	7.9
계	보험료	72,299	77,962	76309	29,829	79,300	81,659	92,201
	성장률	16.5	12.3	18.3	15.0	14.5	12.9	18.3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0.7	40.2	39.6	40.9	47.0	44.0
	사업비율	42.7	48.6	45.6	49.6	44.0	47.4
	합산비율	83.4	88.8	85.2	90.5	90.9	91.3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0.3	46.4	52.1	47.3	54.8	58.7
	사업비율	30.0	31.2	33.5	32.7	31.9	31.8
	합산비율	80.2	77.7	85.6	80.0	86.7	90.6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8.9	79.5	79.0	73.6	73.7	73.9
	사업비율	31.6	31.5	31.8	29.8	30.7	31.0
	합산비율	110.5	111.0	110.7	103.4	104.5	104.9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10.5	21.5	23.4	28.0	24.3	17.8
	사업비율	19.2	17.3	21.5	16.0	20.4	13.5
	합산비율	29.7	38.8	44.9	43.9	44.7	31.3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5.8	56.8	55.3	54.3	56.5	58.2
	사업비율	23.3	24.5	26.2	24.7	25.0	25.6
	합산비율	79.2	81.3	81.5	79.0	81.5	83.8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0.4	36.7	44.7	26.8	29.4	30.6
	사업비율	97.3	98.0	93.2	62.1	70.5	66.0
	합산비율	137.7	134.7	137.9	88.9	99.8	96.6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5.3	84.3	83.9	81.8	81.5	81.3
	사업비율	18.0	18.5	18.4	17.9	18.2	18.4
	합산비율	103.2	102.8	102.3	99.7	99.7	99.8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9.8	118.9	125.4	115.8	116.0	116.4
	사업비율	9.2	9.3	9.4	9.4	9.6	9.9
	합산비율	129.0	128.2	134.8	125.2	125.6	126.3
전 체	경과손해율	78.7	78.8	78.6	75.8	75.9	75.9
	사업비율	23.2	23.5	23.8	22.4	23.0	23.0
	합산비율	101.9	102.3	102.3	98.2	98.9	98.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 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검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연구조사자료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김세환,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조재현,박정희 2006.3
- 2006-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방안 / 류건식,김석영,이상우,박정희,김동겸 2006.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장이규,이경희,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 정책연구자료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6.11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비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회사 CEO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20호 선진 보험회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관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CEO Report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정기간행물

■ 계간

보험동향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 (5~10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 (5~10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 (5~10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 ~ 4회 ₩ 30,000)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3~4회)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3~4회) ☐ 보험동향(계간)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414,4415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연구원 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도서

2008년 4월 2일

발행인	나	동	민
편집인	나	동	민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400
인 쇠 소 대 화 인 쇠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68-4422 368-4423)로 연락하여 주십시오.